월간

재정포럼

2021. April_Vol.298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4

권두칼럼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확대 | 하준경

현안분석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 조희평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 장우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포럼

2021.4 Vol.298
월간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통권** 제298호_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4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확대 | 하준경 02

현안분석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 조희평 08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 장우현 2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외 54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확대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는 수많은 정책실험의 계기가 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는 국가부채 비율 위에 추가로 10%p 이상의 나랏빚을 더 얹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투자를 새로 추진하는 등 재정 확대는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

비기축통화국의 국채 급증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국채발행을 통한 과감한 재정 확대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뿐, 비기축통화국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그것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이 가능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국가부채 비율이 급속히 상승할 경우 금리 급등과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외환위기가 유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채 발행을 늘릴 때의 위험(risk)과 늘리지 않을 때의 위험을 냉철히 분석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논의에 앞서 기축통화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기축통화는 1944년부터 1971년까지의 브레튼우즈 체제, 즉 주요국 통화를 달러에 연계시키고 달러는 다시 금에 연계시키는 국제통화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달러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금 몇몇 나라들을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술적으로 엄밀히 맞는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편의상 기축통화국을 미국과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을 개발도상국 등 기타 국가라고 간주하자.

동남아시아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채 급증과 양적 완화

비기축통화국이 국채발행을 급속히 늘리면 위기가 발생하는가? 개도국들의 경우 국채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대규모 국채발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추이를 보면 개도국에서도 국채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채 수요가 부족할 때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 수단까지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신흥시장국들에서 국채발행을 확대하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한 사례들이 있었다.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등이 그 예다.

우리와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보면,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국가부채 비율을 2019년 30.5%에서 2020년 38.5%로 8%p 늘렸다. 필리핀은 41.5%에서 54.5%로 13%p를, 태국은 41.1%에서 50.5%로 9.4%p를 늘렸다. 국가부채 비율을 37.7%에서 44%로 6.3%p 늘렸던 한국보다 상당수 신흥시장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영국 등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부정적'으로 낮아졌지만 국채금리 급등이나 물가·환율 급등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필리핀이나 태국에서도 아직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 비기축통화국들이 한국보다 더 급속히 국채발행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중앙은행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국채 수요를 창출했다. 재정 확대 없이는 거시경제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정책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금리·물가·환율을 크게 자극하거나 통화위기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국채 관련 위험이 커졌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즉 내수 위축과 대량실업이라는 거시경제 위험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증거는 아직 없다.

비기축통화국의 국채발행 확대로 국채 관련 위험이 커졌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거시경제 위험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증거는 아직 없다.

기축통화국의 재정문제와 통화위기

반대로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통화위기에서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다. 경

현재의 국제통화체제에서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은 기축통화국 여부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불균형이다.

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와중에 환율 절하를 막으려다가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고 결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구제금융을 받는 식의 위기는 1994년 멕시코, 1997년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1976년 '기축통화국'인 영국에서도 일어났다. 영국은 1992년에도 '검은 수요일'로 불리는 통화위기를 맞은 바 있다.

2010년의 남유럽 재정위기도 기축통화로 간주되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은 유로존 국가들이지만 당시 국채금리가 폭등했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이 위기는 국제수지 위기라고도 불린다. 유로화 도입 때문에 유로존 내부 국가들 사이의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 사라지자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서 남유럽의 경상수지 적자와 민간부채도 커졌다. 이러한 경제 불균형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남유럽에서는 민간 부실이 재정 부실로 전이됐다.

유로화 도입 이후 남유럽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장기간 동시 발생했던 것은, 이들이 사실상 남의 나라, 특히 독일의 돈을 빌려 자기 나라 재정을 충당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독일 은행들이 남유럽을 못 믿겠으니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들은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외국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복지재원을 남의 나라 은행이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은 낮지만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균형

현재의 국제통화체제에서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은 기축통화국 여부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불균형이다. 기축통화국에 가장 가까운 미국조차도 자국의 금융 불균형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위기는 대개 민간부채의 누적과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발생하고, 재정은 위기를 수

습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떠안게 된다.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야 한다. 재정적자와 국채 누증은 일본처럼 극심한 내수 부족을 반영할 수도 있고, 과거 남유럽처럼 구조적 경상수지 적자를 반영할 수도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급증하는 것은 무언가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므로 주의해서 볼 일이다. 이때 재정 확대가 민간 수요의 급속한 감소를 메워주고 구조적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부채는, 수치 그 자체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민간부문의 불균형, 예컨대 내수 부족, 양극화, 일자리 문제, 경상수지 문제 등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 전반이 균형을 이루면 나랏빚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외국 돈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랏빚은 거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일 수 있다.

경제의 부채구조를 보면 국가부채 이자부담과 가계부채 이자부담은 대개 대체관계를 보인다. 달러가 유입되는 무역흑자국이 '비기축통화국'이라서 국채발행을 억제하려고 무리를 하면 내수부문이 위축되고 가계살림이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이 민간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여 결국 재정부담을 키우는 더 큰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KDI

달러가 유입되는 무역흑자국이 '비기축통화국'이라서 국채발행을 억제하려고 무리를 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이 민간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여 결국 재정부담을 키우는 더 큰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안분석

■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조희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1)]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cho@kipf.re.kr)

Ⅰ. 서론

지방분권이 활성화된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로 및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여가시설을 건설하며 공원 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도시의 거주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정책과 사업들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각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먼저 시민들에게 현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지를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주관적인 만족도는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응답자와 도시 간에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도시의 자연환경,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하고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도시 거주환경 지수를 고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의 설문을 활용한 방법에 비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항목 선정과 가중치 부여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의 방법들과 다르게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간단하면서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모형에서는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을 가정한다. 따라서 균형에서는 경제주체가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효용(만족감)을 가지며 다른 도시로 이사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에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그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가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비용은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높은 생활비와

1) 본 연구는 조희평, 「한국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Working Pape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의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목적에 맞게 발췌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도시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평균적인 임금과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공간균형 모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도출하는가는 미국에 있는 두 도시의 예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일 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관광도시이다. 호놀룰루의 생활비와 집값은 미국의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지만 임금수준은 평균을 하회한다. 호놀룰루의 주민들은 이러한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을 호놀룰루가 주는 높은 거주환경의 질로 보상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기후나 자연환경, 안전성 등에서 호놀룰루보다 뒤처지는 편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높은 임금으로 이러한 디트로이트의 낮은 거주환경의 질을 보상받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그 도시의 평균적인 임금수준과 가격수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균형 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들은 대부분 서울시와 서울시 주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주환경의 질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당히 큰 거주비용 격차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시는 전국 평균 수준의 거주환경의 질을 보였다. 하지만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거주환경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도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격차는 설문을 통해 조사된 주관적인 거주지 만족도 격차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거주환경의 질 지수가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도시의 임금과 주택가격을 활용하여 도시 거주환경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추정한 기존의 도시경제학 연구에 기반을 둔다(Rosen, 1979; Roback, 1982; Blomquist et al., 1988; Beeson and Eberts, 1989; Gabriel and Rosenthal, 2004). 이번송·김용현(2004)은 이와 같은 도시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1998년 한국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하였다. Albouy(2012)는 기존 연구 모형에서 간과된 비주거재화(non-housing goods)와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

본 연구는 도시의 임금과 주택가격을 활용하여 도시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한 기존의 도시경제학 연구에 기반을 둔다.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을 통한 도시 거주환경의 질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 추정하는 지수는 거주환경의 질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평균적인 지불용의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좀 더 현실에 부합한 미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lbouy(2012)의 개선된 방법론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2019년 한국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했다는 데에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2)]

다만 이러한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모형에서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은 가구의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때때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관성(path dependency)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완전한 이동성 가정이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추정하는 지수는 도시의 절대적인 거주환경의 질이 아닌, 이러한 거주환경의 질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평균적인 지불용의금액(willingness-to-pay)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이론 모형

1. 공간균형 모형

본 장에서는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계산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소개한다. 이 모형에서 개별가구는 일정한 수준의 효용을 얻기 위해 어떤 도시에 거주할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먼저 가구의 효용(만족감)은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U(x, y; Q^j) \qquad \text{식 (1)}$$

x는 비주거재화(non-housing goods), y는 주거재화(housing goods), Q^j는 도시 j의 거주환경의 질(quality of life)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거재화는 개별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며 비주거재화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

2) 구체적으로는 추정을 위한 모수(parameter) 설정에 한국의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격격차 추정 시 전세제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였다. 다만 2019년 이후 도시 간의 임금격차나 가격격차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본 연구의 추정치는 최근의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가구가 거주하는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의 도시 어메니티(amenities)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총합이다. 가구의 만족도는 비주거재화나 주거재화가 많을수록, 그리고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상승하게 된다.[3)]

이 모형에서 중요한 가정은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이다. 개별가구는 이동비용이 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도시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줄 경우 가구들은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도시로 이동할 유인이 생기는데,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equilibrium)이 아닌 상태이다. 따라서 균형상태에서 가구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효용($\overline{u}$)을 가진다.

예산의 제약이 있는 개별가구는 다음과 같은 비용 극소화 문제를 풀게 된다.

$$e(p_x^j, p_y^j, \overline{u}; Q^j) = w^j + I - \tau(w^j + I) \qquad \text{식 (2)}$$

여기서 좌변은 일정한 효용($\overline{u}$)을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총비용이며 우변은 세후소득이다. p_x^j와 p_y^j는 각각 비주거재화(x)와 주거재화(y)의 도시 j에서의 가격을 나타낸다. 또한 w^j는 도시 j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혹은 노동소득이며 I는 거주도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소득 등의 비노동소득이다.[4)] 개별가구가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에 대한 함수인 $\tau(w^j + I)$로 표현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식 (2)를 로그선형화(log-linearize)하여 풀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widehat{Q^j} = s_x \widehat{p_x^j} + s_y \widehat{p_y^j} - (1 - \tau') s_w \widehat{w^j} \qquad \text{식 (3)}$$

여기서 $\widehat{x^j} = dln(x^j / \overline{x}) = dx^j / \overline{x}$는 x^j의 전국 평균($\overline{x}$)으로부터의 로그격차(log deviations)로 정의된다. 이는 도시 j의 x값이 전국 평균($\overline{x}$)보다 몇 퍼센트 높은지(낮은지)로 해석되며, x가 전국 평균과 같을 경우 0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widehat{Q^j}$, $\widehat{p_x^j}$, $\widehat{p_x^j}$, $\widehat{w^j}$는 도시 j의 거주환경의 질, 비주거재화의 가격, 주거재화의 가격, 임금 각각의 전국 평균으로부터의 격차(전국 평균과의 퍼센트 차이)를 의미한다. s_x와 s_y는 각각 총소득에서 비주거재화 소비와 주거재화

본고의 공간균형 모형에서 중요한 가정은 완전한 이동성이다. 개별가구가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도시로 이동할 유인이 생기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 아닌 상태이므로, 균형상태에서 가구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효용을 가진다.

3) 가구의 효용은 x, y, Q^j에 대해 준오목함수(quasi-concave)의 형태를 가진다.
4) 가구는 1의 노동을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도시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을 식 (3)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의 실질임금이 낮을수록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높은 것이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s_w는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계세율, 즉 1원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한다.

도시 j의 거주환경의 질($\widehat{Q^j}$)은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인 도시에 사는 것과 비교하여 도시 j에 거주할 때 몇 퍼센트의 소비지출을 포기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도시의 평균적인 가격수준($\widehat{p_x^j}$, $\widehat{p_y^j}$)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의 임금수준($\widehat{w^j}$)이 낮을수록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을 식 (3)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의 실질임금(임금/가격)이 낮을수록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높은 것이다.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도시의 평균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비례하고 임금에 반비례한다는 식 (3)의 결과는 직관에 어긋나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거주환경의 질 지수($\widehat{Q^j}$)가 개별가구의 삶의 질(행복)이 아닌 도시 자체의 거주환경의 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거주환경의 질이 높은 도시에 사는 가구가 거주환경의 질이 낮은 도시에 사는 가구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의 완전한 이동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상태에서는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어떤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낮다면 개별가구는 그만큼의 저렴한 생활비와 높은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즉, 거주환경의 질이 낮은 도시에서는 낮은 생활비와 높은 임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며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높다면 개별가구는 그 도시에 살기 위해 높은 생활비로 인한 낮은 소비수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2. 모수의 설정

본 절에서는 식 (3)의 모수(parameters)인 s_x, s_y, s_w, τ'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간단히 요약한다. 모든 값은 소득을 가중치로 둔 전국 평균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비주거재화 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s_x)은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0.551로 계산되었다. 주거재화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s_y)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의 매매가 및 임대료 자료와 평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활용하여 0.160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s_w)은 임용빈(2020)에서 추정한 자영업 부문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인 0.793을 사용하였다.

평균한계세율은 2019년도 평균한계소득세율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평균요율을 합한 값이다. 2019년 평균한계소득세율과 평균 4대보험요율은 각각 0.217과 0.091로 추정되었다.[5)]

위에서 구한 모수를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모수 설정

비주거재화 비중	s_x	0.551
주거 관련 재화 비중	s_y	0.160
노동소득 비중	s_w	0.793
평균 한계세율	τ'	0.308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주택가격($\widehat{p_y}$)의 지역별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비주거재화 가격($\widehat{p_x}$)의 지역별 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6)] 따라서 비주거재화의 가격격차는 2015년과 2020년 사이 37개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가 지역별 임차료물가지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도시의 임차료 물가가 10% 올라갔을 때, 그 도시의 임차료 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물가는 0.59%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의 비주거재화 가격격차는 다음과 같은 주거재화 가격격차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widehat{p_x^j} = 0.059\widehat{p_y^j} \qquad \text{식 (4)}$$

최종적으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표 1>의 모수와 식 (4)를 식 (3)에 대입함으로써 임금과 주택가격의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widehat{Q^j} = 0.193\widehat{p^j} - 0.549\widehat{w^j} \qquad \text{식 (5)}$$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표 1>의 모수와 식 (4)를 식 (3)에 대입함으로써 식 (5)와 같이 임금과 주택가격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5)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수 있는 부분은 세율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6)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역별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도시별 임금격차는 도시의 인구구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별 주택가격 격차 역시 주택의 종류·계약형태·특성 등을 모두 통제하여 추정한다.

Ⅲ. 자료와 추정방법

본 장에서는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widehat{Q^j}$) 계산에 바탕이 되는 도시의 주택가격 격차($\widehat{p^j}$)와 임금격차($\widehat{w^j}$)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고에서 '도시'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154개)으로 정의하며 총 162개의 도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7)]

먼저 각 도시별 임금격차($\widehat{w^j}$)를 구하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조사된 25세와 55세 사이의 임금근로자 샘플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량식을 추정하였다.

$$\ln w_i^j = X_i^j\beta + \mu^j + e_i \qquad \text{식 (6)}$$

X_i^j는 근로자의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직업, 산업, 정규직 여부)이며 μ^j는 도시고정효과이다.[8)] 도시 간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차이는 도시의 인구구성,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거나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정된 μ^j는 교육수준 및 연령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시 자체의 특성이 임금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도시의 임금프리미엄). 이 값을 평균 0이 되도록 표준화하면 도시의 로그임금격차인 $\widehat{w^j}$가 된다.

다음으로 도시별 주택가격격차($\widehat{p^j}$)를 구하기 위해 2019년도 국토교통부 전국 실거래가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계량식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거래가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9)] 특정 주택의 종류나 계약형태에 한정하여 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거주형태를 가격지수 계산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10)]

$$\ln p_i^j = Y_i^j\beta + v^j + e_i \qquad \text{식 (7)}$$

Y_i^j는 주택의 종류(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계약형태(매매, 전세, 월세), 주택의 특성(면적, 건축연도, 층수)이며 v_i^j는 도시고정효과이다. 주택의 가격은 면적이 넓을수록, 건축연도가 늦을수록, 층수가 높을수록 대체

7)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도시로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거주구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8) X_i^j는 특성변수들의 각각의 고정효과를 성별고정효과와 교호(interaction term)하였다.
9) 반전세의 경우 2019년도 전국 평균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여 모두 월세로 환산하였다.
10) [그림 5]는 전세가격만을 활용하여 구한 거주환경의 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를 활용한 지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적으로 높고, 이러한 주택의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의 종류와 계약형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11] 추정된 v_i^j는 이러한 주택의 종류·계약형태·특성 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 자체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을 평균 0이 되도록 표준화하면 도시의 로그가격격차인 $\widehat{p^j}$가 된다.

Ⅳ. 도시의 임금격차·가격격차·거주환경의 질

식 (6)에서 추정된 도시의 임금격차($\widehat{w^j}$)는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다. 본 그래프의 x축은 개인의 특성(X_i^j)이 통제되지 않은 로그임금격차(무보정)이며, y축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로그임금격차(보정)를 나타낸다. 표준편차의 변화(0.08→0.05)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도시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종의 인구가 몰려 있

[그림 1] 도시의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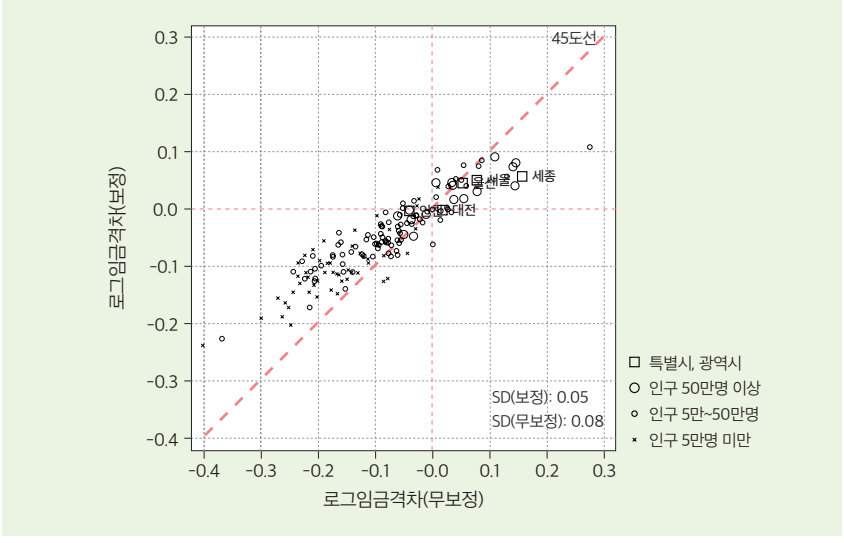

주: 1. x축은 식 (6)에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도출된 로그임금격차임
2. y축은 식 (6)에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고 도출된 로그임금격차임
3. 0은 각 지수의 전국 평균을 나타냄
4. SD는 2019년도 인구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각 지수의 표준오차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의 표준편차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도시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구체적으로는 Y_i^j에서 주택 특성 각각의 고정효과를 주택의 종류 및 계약형태의 고정효과와 교호하였다.

도시 간 주택의 가격격차는 주택의 특성이 통제됐을 때 오히려 확대된다. 이러한 도시 간 주택가격의 차이는 도시 간 임금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도시의 가격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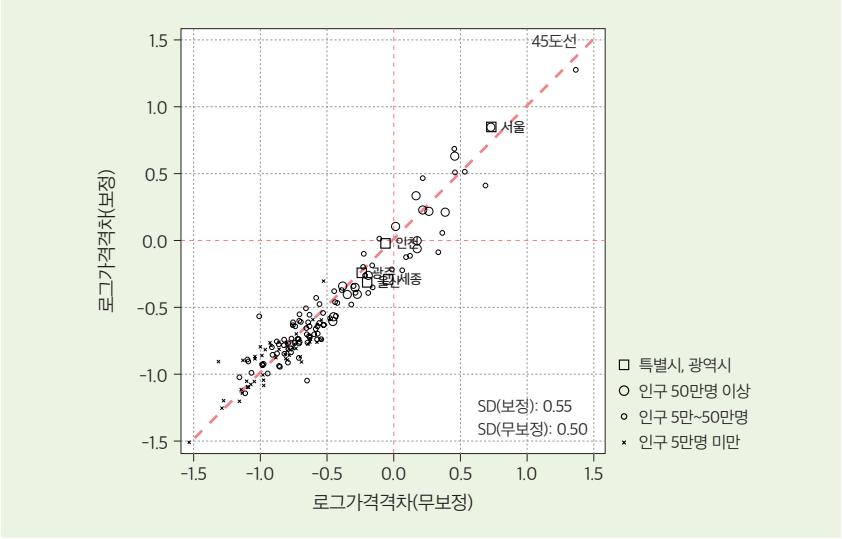

주: 1. x축은 식 (7)에서 주택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도출된 로그가격격차임
2. y축은 식 (7)에서 주택의 특성을 통제하고 도출된 로그가격격차임
3. 0은 각 지수의 전국 평균을 나타냄
4. SD는 2019년도 인구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각 지수의 표준오차임

출처: 저자 작성

는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약 15% 더 높은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는 전국 평균보다 5%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widehat{w^{세종}} = 0.05$). 전반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도시 및 당진시와 광양시 등의 산업도시들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도시 간 임금격차는 다음에 설명할 주택가격격차에 비해 작은 편이다.

[그림 2]는 식 (7)에서 추정된 도시의 주택가격격차($\widehat{p^j}$)를 보여주고 있다. 본 그래프의 x축은 주택의 특성(Y_i^j)이 통제되지 않은 로그가격격차(무보정)이며, y축은 주택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로그가격격차(보정)를 나타낸다. 각 지수의 표준오차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간 주택의 가격격차는 주택의 특성이 통제됐을 때 오히려 확대된다(0.50→0.55). 예를 들어, 서울시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70% 높지만, 주택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전국 평균보다 86%가량 더 높다($\widehat{p^{서울}} = 0.860$). 대체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주변 도시들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간 주택가격의 차이는 도시 간 임금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임금격차·가격격차·거주환경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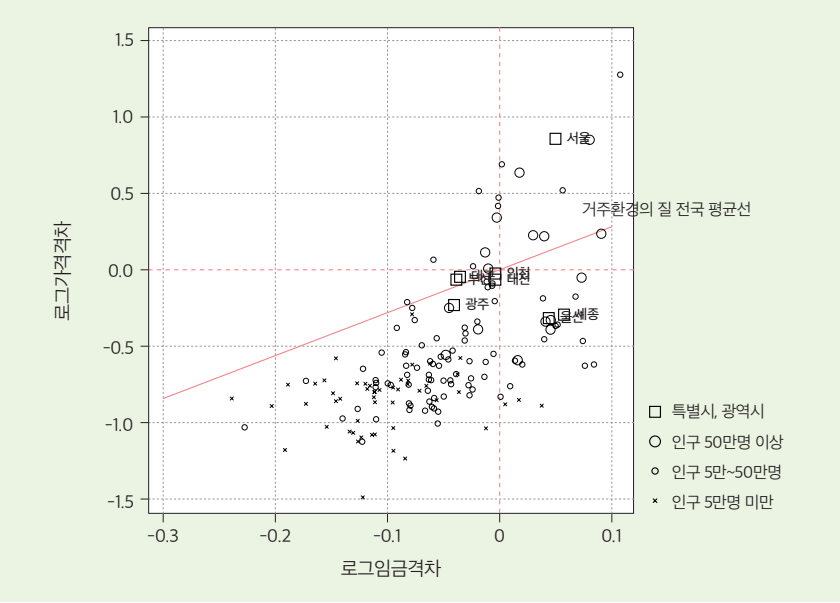

주: 그래프의 직선은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전국 평균($\widehat{Q} = 0$)으로 만들어주는 로그임금격차($\widehat{w^j}$)와 로그가격격차($\widehat{p^j}$)의 집합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은 도시의 로그가격격차와($\widehat{p^j}$) 도시의 로그임금격차($\widehat{w^j}$)를 같은 그래프에 나타낸다. 먼저 그래프를 통해 도시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임금 또한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론모형에서 도출된 식 (5)를 활용하여 거주환경의 질($\widehat{Q}$)이 같은 $\widehat{p^j}$와 $\widehat{w^j}$의 집합을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직선이 좌상향할수록, 즉 가격이 증가하고 임금이 감소할수록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높아진다. 특별히 [그림 3]의 실선은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 수준($\widehat{Q} = 0$)인 $\widehat{p^j}$와 $\widehat{w^j}$의 집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직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 높다($\widehat{Q} > 0$). 반대로 직선 아래에 있는 도시들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widehat{Q} < 0$).

도시마다 추정된 임금격차($\widehat{w^j}$)와 가격격차($\widehat{p^j}$) 및 식 (5)를 이용하여 거주환경의 질($\widehat{Q}$)을 계산한 결과,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은 수도권의 매우 높은 가격 혹은 거주비용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국에서 거주환경의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집중된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은 수도권의 매우 높은 가격 혹은 거주비용에 반영되어 있다.

광역시는 대체로 전국 평균 수준의 거주환경의 질 수준을 보였다.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질이 가장 높은 도시는 경기도 과천으로 나타났다. 과천의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수준($\widehat{w^{과천}} = 0.108$)에 불과하지만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120% 이상 높다($\widehat{p^{과천}} = 1.273$). 즉, 과천 주민은 임금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생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도시에 사는 것에 비해 19%만큼 소비지출을 줄여야 한다($\widehat{Q^{과천}} = 0.186$). 이는 반대로 과천 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환경의 질로 낮은 소비지출 수준을 보상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시는 대체로 전국 평균 수준의 거주환경의 질 수준을 보였다.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는 임금과 가격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전국 평균 수준의 거주환경의 질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울산시와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지만 임금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도시들에 거주하는 비용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반대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을 수 있는 거주환경의 질을 높은 소비지출 수준으로 보상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본 추정치는 2019년도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최근의 급격한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다만 일부 지방 도시들은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 예로 서귀포시의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20%가량 낮은 수준이지만($\widehat{p^{서귀포}} = -0.222$) 임금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8% 낮다($\widehat{w^{서귀포}} = -0.082$). 서귀포시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하고 제주도에 살고 있으며, 이는 반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환경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몇 년 전에 불었던 제주도 이주 열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 어느 곳의 거주환경의 질이 대체로 높을까? 대도시는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범죄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반대로 중소도시는 대체로 한적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이 갖추어졌지만, 대도시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그림 4]는 거주환경의 질과 도시의 인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주로 거주환경의 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그림 4] 거주환경의 질과 인구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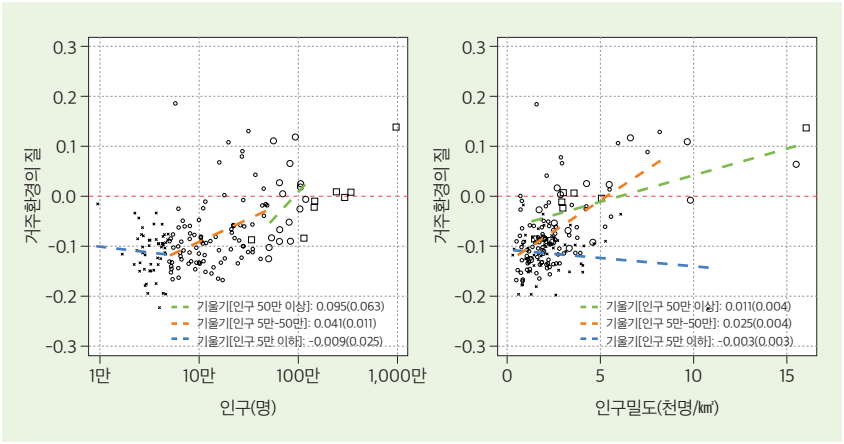

주: 그래프 하단에 표시된 기울기 값은 거주환경의 질과 로그인구(인구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가중치는 2019년도 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음. 기울기 계산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였음
출처: 저자 작성

다.[12] 이러한 거주환경의 질과 인구와의 양(+)의 상관관계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의 결과를 인구 밀집도 자체가 거주환경의 질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인구밀집과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요인들(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의 밀집 등)이 거주환경의 질의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도시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이 해당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13] 하지만 이와 같은 거주환경의 질과 인구와의 양(+)의 상관관계는 도시화 혹은 인구 집중이 거주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택가격격차($\widehat{p^i}$) 계산 시 매매가와 월세를 제외한 전세가격만을 사용하여 거주환경의 질을 도출하는 강건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 가격격차 각각을 거래 비중에 따라 평균한 지수를 주택가격격차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자가와 전월세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거주형태를 거주환경의 질 계산에 충분이 반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매매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적 목적의 거래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 살기 위한 실질적인 생활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그림 5]는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을 모두 사용하여 도출된 기존의 거주환경의 질(x축)과 전세가격만을 사용하여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y축)을 비교하고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주로 거주환경의 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시화 혹은 인구 집중이 거주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다만 5만명 이하의 도시들로 한정했을 때 거주환경과 인구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소규모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도시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샘플 부족으로 인한 측정오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13) 이러한 현상은 계량경제학에선 각각 누락변수편이(omitted variable bias)와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라고 칭한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45도선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볼 때, 전체적인 거주환경의 질의 패턴은 어떤 형태의 주택가격을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전세가격에 기반을 둔 거주환경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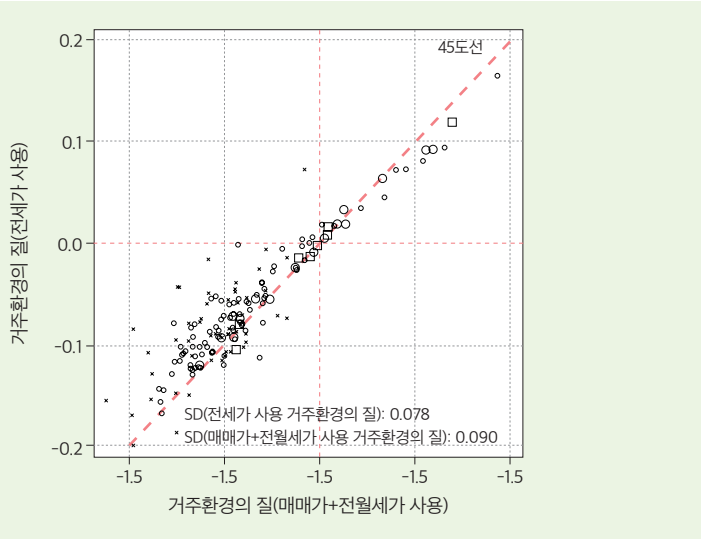

주: x축은 가격격차 추정 시 매매가와 전월세가를 모두 사용하여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인 반면에 y축은 가격격차 추정 시 전세가만을 사용하여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임
출처: 저자 작성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정된 거주환경의 질 지수는 두 지표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0)보다 높은 도시는 대부분 45도선 아래에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전세가에 기반을 둔 거주환경의 질 지수가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을 동시에 사용한 거주환경의 질 지수보다 다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 간 거주환경의 질 격차의 표준오차가 전세가격만을 사용했을 때 더 작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45도선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볼 때, 전체적인 거주환경의 질의 패턴은 어떤 형태의 주택가격을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여 도시의 임금격차를 추정하고 거주환경의 질을 도출하였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업과 거주의 이동성이 낮은 편이고 이는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 공무원이 밀집한 세

[그림 6] 공무원을 제외한 거주환경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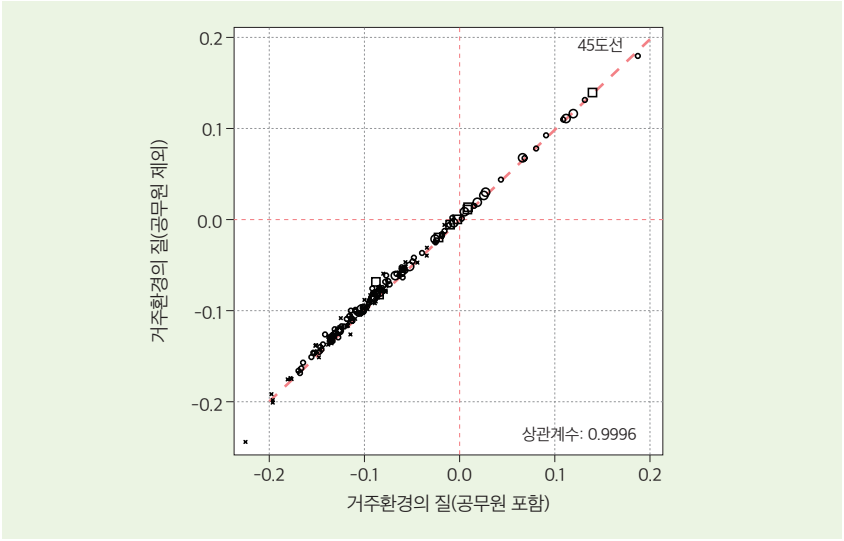

주: x축은 임금격차 추정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인 반면에 y축은 임금격차 추정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여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임
출처: 저자 작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거주환경의 질 추정값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이전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주환경의 질 추정값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상관계수: 0.9996).

Ⅴ. 거주환경의 질 지표와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 비교

본 장에서는 공간균형 모형에서 도출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과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주관적인 거주지 환경 만족도를 비교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주관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정량화하기가 힘들며 조사 대상 간, 도시 간 비교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즉, 서울시에 사는 20대의 "매우 만족"과 시골에 사는 50대의 "매우 만족"은 단순비교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본고에서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 척도가 실제적인 주민의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공간균형 모형에 기초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지수는 임금가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단순한 주택가격보다 주민들의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거주환경 만족도에 대해 시군별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없으며, 광역지자체별 혹은 기초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된 조사자료만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응답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2019년도 사회조사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경기도 사회조사의 응답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충청남도 사회조사의 응답자는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해 10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를 모두 100점 척도로 재환산하여 각각의 시군별 평균을 구하고 공간균형 모형에 기반을 둔 본고의 거주환경의 질 지수와 비교하였다.

[그림 7]의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의 주택가격(주택의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거주환경의 질, 그리고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를 비교하고 있다. 좌상단의 그래프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환경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주택가격과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상단의 그래프에서는 공간균형 모형에서 도출된 거주환경의 질 역시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도시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혹은 거주환경의 질 지표가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와 이 두 지표(주택가격과 거주환경의 질)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거주환경의 질 지수($R^2=0.47$)가 단순한 주택가격($R^2=0.33$)보다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를 보다 더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7]의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의 주택가격, 거주환경의 질, 그리고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를 비교하고 있다. 좌하단의 그래프는 앞서 경기도의 사례와는 달리 주택가격이 주거환경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도 작다($R^2=0.03$). 반면에 우하단의 그래프에서는 거주환경의 질 지표와 거주지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주환경 만족도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2=0.4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간균형 모형에 기초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지수는 임금가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단순한 주택가격보다 주민들의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도시의 속성과 거주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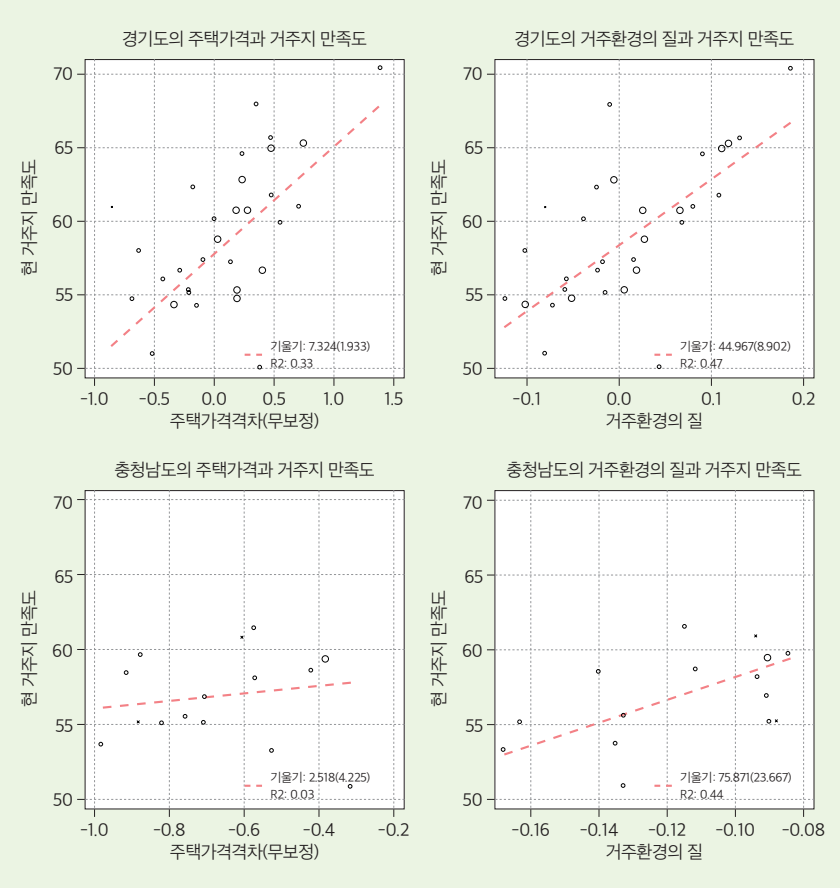

주: 기울기 계산 시 가중치는 2019년도 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음
출처: 저자 작성

본고에서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Ⅵ. 맺는말

본고에서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개별가구는 자신의 예산 제약(세후소득)하에서 자신의 소비수준과 거주하는 도시가 주는 거주환경의 질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이를 통해 도시의 임금과 가격자료만으로 그 도시가 주는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할 수 있다. 임금이 낮고 주택가격이 높으면 많은 소비를 할 수는 없

거주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한 생활비로 높은 거주환경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만 도시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로 보상받는다. 반면에 임금이 높고 주택가격이 낮으면 도시의 낮은 거주환경의 질을 높은 소비수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아래에서 2019년도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한 결과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대부분 서울시와 서울시 주변 수도권 도시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임금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전국 평균 수준의 임금, 가격 및 거주환경의 질을 보였다. 반면에 수도권 도시들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수의 지방 도시들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거주환경의 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공간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추정된 거주환경의 질은 설문을 통해 조사된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앞에서 구한 거주환경의 질 지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첫 번째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모형에서는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을 가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본 모형에서는 통근비용이 거주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통근시간이 긴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수의 설정방법이나 분석자료, 계량추정 방법 등에 따라 거주환경의 질 수치는 일정 부분 변동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추정된 지수는 도시 거주환경의 절대적인 수준이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지수는 거주환경의 질을 일정 부분 반영한 도시에 대한 평균적인 지불용의(willingness-to-pay)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한 생활비로 높은 거주환경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은 도시의 인구 집중이 거주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환경의 질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에 거주환경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자체 간 재정수요 및 재정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력 차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간 거주환경의 질 격차를 고려

한 재정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거 및 재정 정책은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함께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주환경의 질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에 거주환경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번송·김용현, 「도시의 인적자본, R&D 및 기타 특성이 도시의 임금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도시 삶의 질 측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2(2), 2004, pp. 115~150.

임용빈,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노동리뷰, 47-62, 2020.

조희평, 「한국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Working Pape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Albouy, D., "Are Big Cities Bad Places to Live? Estimating Quality of Life across Metropolitan Areas," Working Paper, 2012.

Blomquist, Glenn C., Mark C. Berger, and John P. Hoehn, "New Estimates of Quality of Life in Urban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78, 1988, pp. 89~107.

Beeson, Patricia E. and Randall W. Eberts, "Identifying Productivity and Amenity Effects in Interurban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 1989, pp. 443~452.

Gabriel, Stuart A. and Stuart S. Rosenthal, "Quali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versus Quality of Life: Do Firms and Households Like the Same Cit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 2004, pp. 548~444.

Rosen, Sherwin, "Wages-based Indexes of Urban Quality of Life," in P. Mieszkowski and M. Straszheim, eds., *Current Issues in Urban Economics*,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1979.

Roback, Jennifer, "Wages, Rents,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1982, pp. 1257~1278.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1)]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wchang@kipf.re.kr)

Ⅰ. 서론

2020년 1월부터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염병과 달리 보건 외에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크고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 영역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큰 파급력을 보였으며, 특히 대면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타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이와 같은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응에는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전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현황 파악에서 코로나19의 전파와 그에 따른 영향은 실시간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즉각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산출에 1년 또는 1분기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제통계들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경제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규모가 작고 진출입이 활발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한 통계인데 코로나19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은 계층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고용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정정책 전달체계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위한 긴급구제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달체계만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 본 고는 김문정·장우현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orking Paper, 2021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재정포럼』에 소개할 목적으로 정리한 원고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주요 피해 대상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피해 집단이 파악된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긴급구제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원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도전적 상황에 대한 정책연구의 대응 사례로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특히 사업체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설계에 참고가 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고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응에 해당하는 연구인만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용카드 정보가 완벽한 것이 아님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자료거나 적어도 최선의 자료 중 하나라는 점이다. 먼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용카드 자료는 매출과 소비 중심의 자료이므로 비용 구조나 소득 등의 자료는 보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카드 사용액에 국한하므로 현금 사용액이 누락되는 등 포괄성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정책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는 예산의 제한이나 개인정보의 문제로 인해 더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사태를 맞아 현존하는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실시간 대응에 있어 신용카드 자료를 대체할 자료는 사실상 없었다. 신용카드 자료는 적절히 가공될 경우 적시성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카드 정보는 본질상 원활한 거래를 위해 구성되고 집적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설계나 집행 목적을 위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이를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목적성을 가지고 정리하고 분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된 자료가 신용카드 자료였지만, 2021년 4월 현재 실제로 2020년 전반에 대해 분석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수와 분석결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신용카드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뤄져 온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 이해, 필요한 자료의 추출 과정을 시급성에 맞춰 진행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이에 대한 노력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2)]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서론과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본고에서 활용한

본고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특히 사업체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설계에 참고가 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초반부터 구입 가능한 데이터의 존재 확인 및 연구 설계에 따른 데이터 레이아웃의 구성과 확정, 기초 분석을 통한 시행착오의 진행 등 본고의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 및 구축 과정을 함께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문정 연구위원님과 최인혁 연구위원님,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자료의 구축임에도 배려와 의견 제시 및 원활한 지원을 해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성원 전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업체와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카드회사인 BC카드와 하나카드의 가맹점 및 사용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병합한 자료이다.

신용카드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제III장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2020년 월별로 2019년 전년 동월 대비 차이를 파악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체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5월에 지급되었던 전 국민 일률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 이전인 4월 기준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과 매출 증가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어지는 제IV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해 보는 한편, 피해액 산정 등 긴급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한 각종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설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V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향후의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제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분석에 사용한 자료 개관

본고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업체와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카드회사인 BC카드와 하나카드의 가맹점 및 사용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병합한 자료이다.

참고로 본고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는 크게 사업체 매출자료와 가구소비 자료로 나뉜다. 먼저 본고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체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월간자료이며, 지역과 업종에 따라 관측치가 구성된다. 지역은 법정동 기준, 업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자료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135개 업종분류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익명성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기준은 5개 이상의 자료 평균으로, 4개 이하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소분류 등 상위 기준으로 높여 5개 이상을 만들어 평균 수치를 집계하였다.

사업체 자료가 연구 설계상 자료 구성에 있어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규모의 구분이다. KCB가 제공한 자영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를 식별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유한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자료를 활용하여 KED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한 사업체 또는 2010~2018년 중 한 번이라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에 속한 사업체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자료와 자영업자 자료, 대기업·중견기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사업체 자료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전체에서 두 수치를 제외한 중간규모 기업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KCB는 카드매출 전부와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해당 정보는 연간자료이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월간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추정치 도출에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간자료로는 BC카드와 하나카드 가맹점들의 매출액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구축한 자료가 개별 사업체 기준이 아니고 법정동-월-업종에 따른 구분이라면 지나치게 간략화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관측치는 11,742,751개에 달한다. 한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경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축한 자료 중 가구자료는 본고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가구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법정동과 월간 기준으로 구성하며,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추정한 세대 기준으로 가구별 자료를 구성한다. 관측치는 법정동과 업종 단위로 구성된다.

요컨대 본고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업체 자료는 BC카드와 하나카드[3] 가맹점 정보를 기반으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모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그 외의 중간규모 기업 사업체로 분류되며, 업종은 기본적으로 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분류되고, 지역은 법정동을 최소단위로 시·군·구, 시·도 기준으로 묶어 분석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용카드 자료는 자료체계를 구축할 경우 2020년 12월 자료가 2021년 1월 중순까지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적시성이 있지만, 다양한 한계도 존재한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외에 현재 구축된 신용카드 자료에서는 BC카드가 전체 카드사용액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월간자료로서 주간이나 일간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의 효과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제하고, 본고에서 제시한

규모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그 외의 중간규모 기업 사업체로 분류되며 업종은 기본적으로 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분류되고 지역은 법정동을 최소단위로 시·군·구, 시·도 기준으로 묶어 분석할 수 있다.

3) 본고에서는 전체 점유율 2위인 BC카드의 분석만을 예시로 제시한다. 참고로 정확한 월별 점유율은 카드사가 공개를 꺼리는 민감 정보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KCB는 대략적인 BC카드 점유율을 24%, 하나카드 점유율은 7%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II장에서 소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월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코로나19가 신용카드 매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제시하고, 피해 여부에 따른 5월 이후의 정책대응 효과의 업종별 차이를 분석한다.

각종 통계 수치의 도출방법이나 효과 추정방법은 데이터를 보강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 측면에서의 한계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자료는 예산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다른 카드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관측기간도 월에서 주, 일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은 향후 극복 가능한 문제임도 함께 서술해 두고자 한다.

Ⅲ. 신용카드 자료로 분석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본 장에서는 제II장에서 소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월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코로나19가 신용카드 매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제시하고, 피해 여부에 따른 5월 이후의 정책대응 효과의 업종별 차이를 분석한다.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 월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먼저 기업규모별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업규모별 월별 매출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확인한바, 2020년 3월과 2020년 12월에 자영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선 그래프는 월별 확진자 수이며 우축이 기준 축이 되고 막대그래프는 전년 동월 규모별 매출액 증감률을 나타낸다. [그림 2]는 구축한 자료에서 2017년부터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차이를 추가 비교하였다.

2020년 3월의 충격은 4월 확진자 감소를 통해 회복세를 보인다는 사실과, 기업규모별로 자영업과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중간규모 기업들은 2020년 연간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기업규모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별 매출 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BC카드 매출액 자료에서 월별 자영업 매출액은 대략 6조원대, 중간규모 매출액은 대략 5조원, 대기업 매출액은 대략 5조원 규모로 파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피해규모가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

[그림 1] 2020년 1~12월 기업규모별 전년 대비 매출 증감,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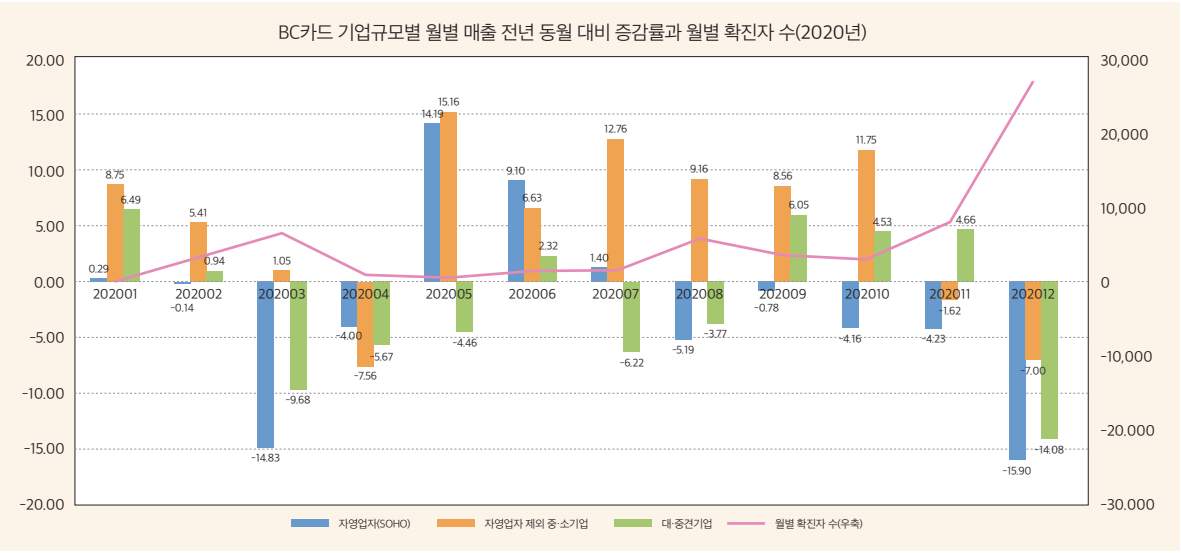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WHO(202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기업규모별 월별 매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비교(2019년 VS 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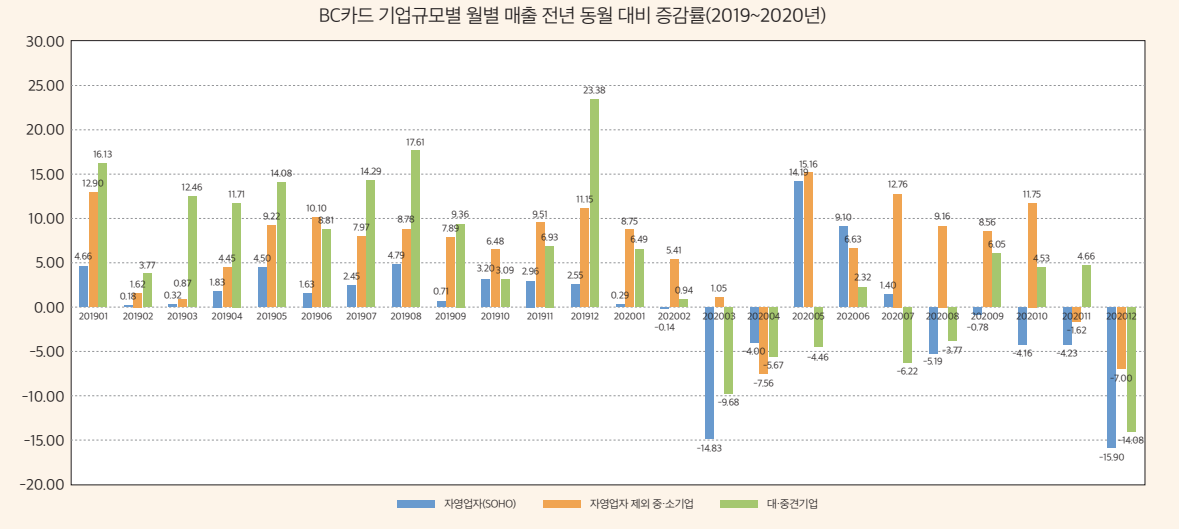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기업규모별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업규모별 월별 매출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확인한바, 2020년 3월과 2020년 12월에 자영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기업규모별 월별 매출 추이(2017~2020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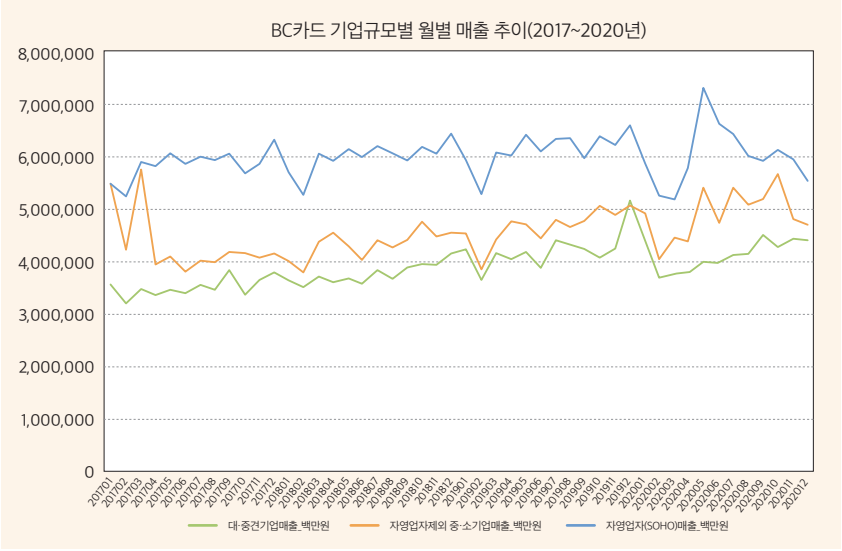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1>과 <표 2>는 중간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즉 대기업·중견기업 규모를 제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통신 판매업, 골프장, 육류 소매업 등은 강세이나 면세점, 백화점, 항공운송업 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업종별 피해의 지속성이다. 경제 전체는 물론,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해도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이후 6월의 통계를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체 경기에는 도움이 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제Ⅳ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맞춤형으로 돕지는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00개 이상의 자영업자 가맹점이 확인되는 업종 중, 2020년 4월 기준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 가운데 18개 업종이 2020년 5월이나 6월의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에 역시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대기업 제외 전년 동월 대비 BC 카드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업종별 상·하위 10개 업종(2020년 9월)

(단위: 원)

매출액 변동 상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매출액 변동 하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통신 판매업	66,685,95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458,239
기타 보건업	8,508,822	공연시설 운영업	-3,352,36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943,944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3,737,815
대형마트	6,758,677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114,559
방문 교육학원	5,260,182	수상 운송업	-6,912,294
슈퍼마켓	4,731,554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12,459,82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4,427,159	협회 및 단체	-21,663,757
금융업	2,155,511	백화점	-61,295,612
육류 소매업	2,090,032	항공 운송업	-110,500,00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1,609,480	면세점	-766,900,000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대기업 제외 전년 동월 대비 BC 카드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업종별 상·하위 10개 업종(2020년 12월)

(단위: 원)

매출액 변동 상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매출액 변동 하위 업종명	평균매출 변동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8,963,481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6,509,587
방문 교육학원	6,473,63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036,609
슈퍼마켓	4,296,251	대형 마트	-7,135,7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219,084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0,145,354
육류 소매업	1,309,513	협회 및 단체	-12,909,211
방송업	1,121,958	자동차 신품 판매업	-16,288,630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780,118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19,048,975
체인화 편의점	370,046	항공 운송업	-112,200,000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	345,137	백화점	-170,600,000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337,954	면세점	-1,117,000,000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코로나19의 피해규모는 업종별로 이질적이며, 피해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업종별로 차이가 확인된다.

<표 3> 자영업자 2020년 4~6월 전년 동월 대비 BC카드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

(단위: %)

2020년 4월 주요 피해업종	변동률	2020년 5월 주요 피해업종	변동률	2020년 6월 주요 피해업종	변동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13.34	예술학원	3.21	전문서비스업	3.31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4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1.17	한식음식점업	0.20
그 외 기타 교육기관	-17.10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	-0.35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67
운송장비용연료 소매업	-18.92	도로화물운송업	-0.82	방문교육학원	-3.48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20.07	방문교육학원	-3.5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4.96
욕탕·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서비스업	-20.96	부동산업	-4.22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5.85
전문서비스업	-22.7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6.81	육상여객운송업	-6.88
방문교육학원	-24.57	오락장 운영업	-12.57	부동산업	-7.80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24.58	육상여객운송업	-14.65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7.92
오락장 운영업	-24.60	예술품·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19.68	욕탕·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서비스업	-12.24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25.10	중고자동차 판매업	-20.94	운송장비용연료 소매업	-14.81
육상여객운송업	-26.79	운송장비용연료 소매업	-21.24	기관구내식당업	-16.00
부동산업	-26.90	전문서비스업	-21.53	예술품·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16.12
기관구내식당업	-31.42	운송장비임대업	-23.65	운송장비임대업	-19.7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31.51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24.68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20.45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31.76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25.95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21.97
예술품·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38.59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26.25	오락장 운영업	-25.48
예술학원	-40.46	기관구내식당업	-30.87	공연시설 운영업	-56.5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70.53	공연시설 운영업	-62.07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65.80
공연시설 운영업	-71.8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76.34	자동차신품 판매업	-80.00

주: 1. 2020년 4월 주요 피해업종 중 5월이나 6월에도 주요 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경우 음영과 중앙정렬로 표시
2. 자영업자 사업장 수 300개 미만 업종과 초등교육기관은 제외하였음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백만원, %)

시·군·구명	매출액 변동	평균 매출액 변동	평균 매출액 변동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152,121.1	-0.551	-22.04
서울특별시 중구	-154,524.3	-0.406	-21.75
경상북도 울릉군	-3,202.83	-0.395	-1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429,854.6	-0.931	-17.99
서울특별시 마포구	-145,664.5	-0.529	-17.72
강원도 정선군	-7,853.25	-0.261	-17.62
강원도 양구군	-4,830.779	-0.322	-17.13
서울특별시 서초구	-192,148.6	-0.635	-17.00
부산광역시 중구	-38,250.22	-0.345	-16.82
강원도 철원군	-9,224.68	-0.290	-16.55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 한국기업데이터(20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하위 10개 시·군·구

(단위: 백만원, %)

시·군·구명	매출액 변동	평균 매출액 변동	평균 매출액 변동률
경기도 화성시	219,941.3	0.565	17.21
경기도 하남시	61,807.72	0.544	17.8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4,108.28	0.447	17.95
인천광역시 동구	16,913.09	0.419	18.34
광주광역시 남구	44,945.59	0.433	18.37
경기도 포천시	52,651.42	0.443	20.22
전라남도 영광군	13,428.82	0.417	20.49
강원도 강릉시	73,841.78	0.423	21.84
경상북도 의성군	10,896.44	0.544	30.35
강원도 영월군	16,095.66	0.627	41.69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업종별 피해의 지속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체는 물론,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해도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이후 6월의 통계를 보아도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코로나19의 피해에서는 지역별 차이도 확인된다. 249개 시·군·구 중 147개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102개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 변동률 구간 전국 지도

구간	범위
1	10 이상
2	10 ~ 0
3	0 ~ −10
4	−10 이하
5	−2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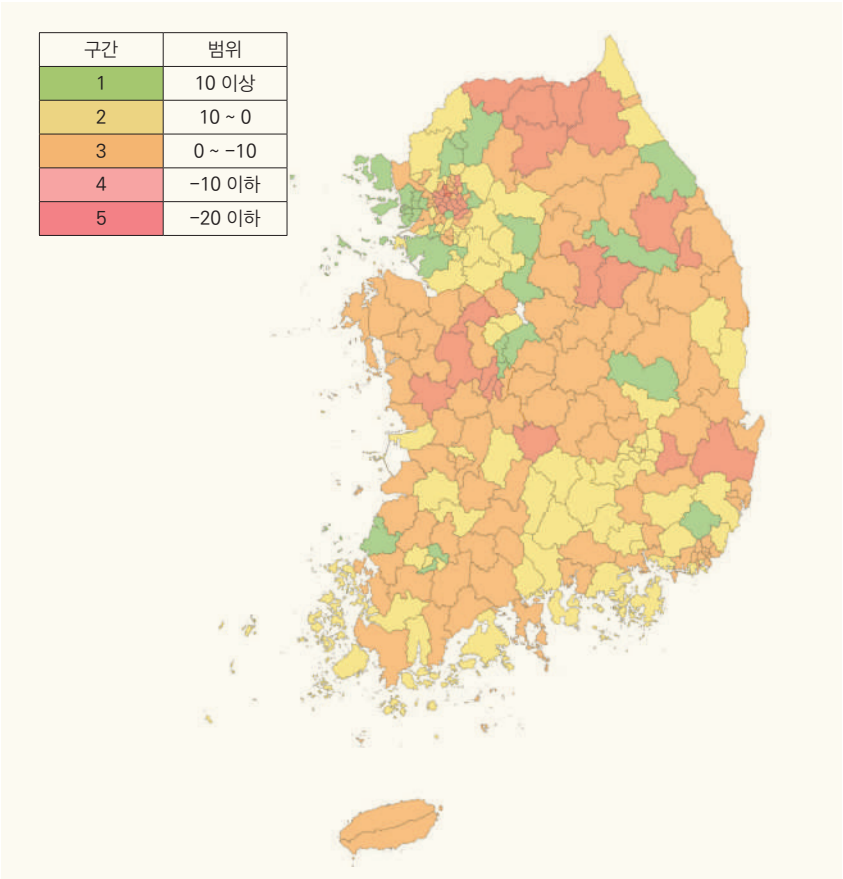

주: 충청북도 증평군은 BC카드 자영업자 정보 집계 시 충분한 익명성 유지가 되지 않아 백색으로 표시함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와 [그림 5]는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액 변동률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하고 2020년 전체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피해에 상당한 편차가 확인된다. 자료 안에서 확인되는 시·군·구 249개 중 147개 시·군·구는 2019년 대비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102개 시·군·구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타격이 컸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등급 산정 시 지역요소도 고려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 변동률 구간 서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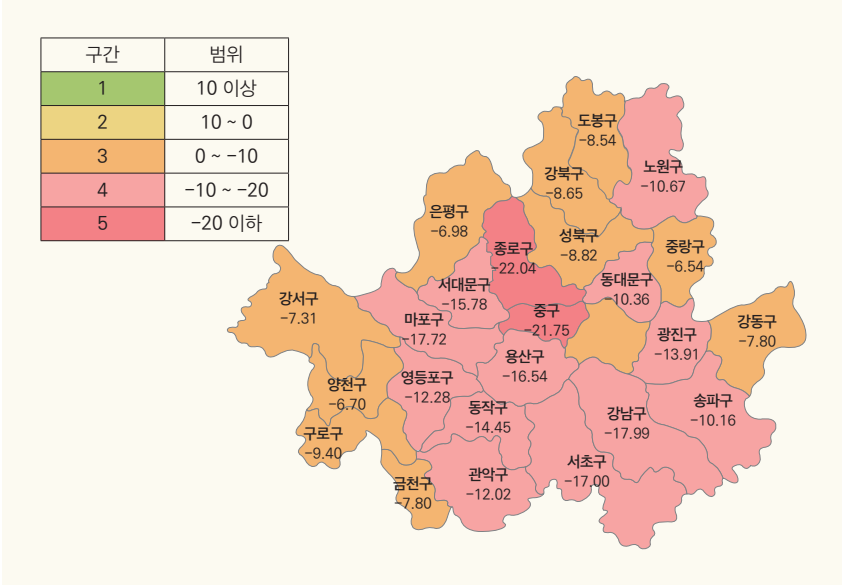

주: 숫자는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 변동률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특히 타격이 컸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등급 산정 시 지역요소도 고려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업종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 분석 :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증감 기준[4)]

본 절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5월과 7월 사이에 집행된 정책들이 업종별로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2017~2020년 2~7월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분석과 업종 및 월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패널 이중차분법 분석을 자영업자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김미루·오윤해(2020), 이우진·강창희·우석진(2020), 홍민기(2020) 등에서 다양하게 다룬 적이 있지만, 해당 연구들은 한계소비성향 관점에서 0.3~0.7 사이의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주목하고 있고 주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에 한정한 업종별 분석은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먼저 효과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이중차분법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5)] 비교 가능성을 위해 홍민기(2020)와 이우진·강창희·우석진(2020) 등

4) 분석의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연구 과정에서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소중한 코멘트를 주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님과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5) 정책변수와 시간변수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이중차분법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이중차분법이다.

기존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매출액 증가 업종은 소비대체 등의 원인으로 2020년 효과 자체도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더 높은 양(+)의 효과를 향유하는 반면, 매출액 감소 업종은 2020년 효과 자체의 타격이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2020년을 이전과는 다른 해, 즉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일어난 해로 활용하고,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기준으로 3개월 전후를 각각 0과 1을 가지는 더미로 처리한다. 이는 이전 연도와 2020년의 2~4월, 5~7월의 공통 추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2020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인 2020년 5~7월을 이중차분변수로 보아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월별로 이전과는 다른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업종 간 이질성의 확인이므로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차이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설계로 진행하기로 한다.

업종의 구분은 2020년 4월이 2020년 3월 타격 이후 자연 회복이 이루어진[6] 달임에 주목하여 해당 달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늘어난 업종과 매출액이 줄어든 업종을 나누어 분석한다.[7]

$$\triangle R_{i,t} = \alpha + \beta_1 D_1 + \beta_2 T_1 + \beta_3 D_1 \cdot T_1 + \varepsilon_{i,t}$$

$\triangle R_{i,t}$: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평균 변화
D_1 : 2020년은 1, 2017~2019년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T_1 : 2~4월은 0, 5~7월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전체 업종에 대한 분석결과, 이중차분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업종별 분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룹을 나누어 2020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던 업종에 한정할 경우에는 32만원가량의 평균 매출액 증가가 유의도 1% 수준에서 유의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매출액이 감소했던 업종에 한정할 경우에는 역시 유의한 매출 변동의 증가분이 확인되지 않아, 타격을 입었던 업종에서 정책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전체 효과의 유의성을 높이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출액 증가 업종, 즉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업종의 경우는 소비대체 등의 원인으로 2020년 효과 자체도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더 높은 양(+)의 효과를 향유하는 반면, 매출액 감소 업종, 즉 피해업종은 2020년 효과 자체의 타격이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2020년 4월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지원은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7)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업종과 불가능업종이 구분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포함한 업종별 실제 최종 효과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6> 2020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업종별 이중차분법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이중차분변수	0.107 (0.209)	0.323*** (0.110)	-0.064 (0.352)
2020년	-0.284*** (0.111)	0.161*** (0.077)	-0.626*** (0.183)
5~7월	0.021 (0.050)	0.011 (0.030)	0.029 (0.09)
상수	0.057 (0.036)	0.072*** (0.020)	0.046 (0.062)
관측치 수	1,729	746	983
업종 수	84	37	47

주: (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유의도는 *** p<0.01, ** p<0.05, *p<0.1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7~2020년 패널자료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업종고정효과와 함께, 월별 고정효과를 시간고정효과로 추가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7~2020년 패널자료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업종고정효과와 함께, 월별 고정효과를 시간고정효과로 추가하여 분석한다.[8)]

$$\triangle R_{i,t} = \alpha + \beta_1 D_1 \cdot T_1 + \beta_2 D_1 + \nu_i + \upsilon_t + \varepsilon_{i,t}$$

$\triangle R_{i,t}$: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변동
ν_i : 업종고정효과
υ_t : 시간고정효과(월별)
D_1 : 2020년은 1, 2017~2019년도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T_1 : 2~4월은 0, 5~7월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분석결과 전체 효과는 매출액 증분의 경우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업종인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업종은 1% 유의도에서 30만원 증가, 4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업종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적으로는 기본 모형과 유사한 결과로, 역시 2020년 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업종은 큰 피해가 확인되는 데 비해 정책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해 업종이 아닌 경우 오히려 2020년의 수혜효과가 발견되면서 추가적인

8) 본 설정에서는 2020년을 실험군으로 하므로 연도 내 각 달의 고정효과를 고려한다. 강건성 확인을 위해 모든 달의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형태로도 분석해 보았는데, 추정결과의 질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매출액 증분을 종속변수로 한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모형에서도 역시 적어도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던 업종에서는 5월 이후 정책에 따른 매출 증가가 확인되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에서는 해당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표 7> 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이중차분변수	0.163 (-0.146)	0.300*** (-0.090)	0.056 (-0.243)
2020년	-0.340*** (-0.103)	0.198*** (-0.063)	-0.746*** (-0.172)
2월	0.061 (-0.129)	0.051 (-0.080)	0.068 (-0.215)
3월	-0.038 (-0.129)	0.029 (-0.080)	-0.093 (-0.214)
4월	0.006 (-0.129)	0.095 (-0.080)	-0.065 (-0.214)
5월	0.093 (-0.119)	0.158** (-0.073)	0.040 (-0.198)
6월	0.041 (-0.119)	0.083 (-0.073)	0.012 (-0.198)
7월	-	-	-
상수	0.034 (-0.091)	0.002 (-0.056)	0.056 (-0.151)
결정계수	0.012	0.125	0.044
관측치 수	1,484	640	844
업종 수	84	37	47

주: (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유의도는 *** p<0.01, ** p<0.05, *p<0.1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정책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던 업종에서는 5월 이후 정책에 따른 매출 증가가 확인되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에서는 해당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시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모형의 설정처럼 사업체의 매출 변동(증가)에 대한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성장이 중요한 기업이나 산업 분석, 특히 유사 규모의 사업체 분석에 있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설정이다. 이를 전제로 강건성 확인을 위해 다음에서는 기업이나 산업 분석 외의 다른 정책평가에서 자주 활용하는 로그 수준[9]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한다.

9) 참고로 기업과 산업 분석 시에는 영업이익과 같이 음(-)의 값을 가지는 변수도 많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이 포함될 경우 로그는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본 자료는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로그를 활용한다.

<표 8> 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월별 로그 매출액 종속변수

구분	전체 업종	매출액 증가 업종	매출액 감소 업종
이중차분변수	0.161*** (−0.038)	0.196*** (−0.058)	0.133*** (−0.048)
2020년	−0.082*** (−0.027)	0.159*** (−0.041)	−0.266*** (−0.034)
2월	−0.187*** (−0.030)	−0.197*** (−0.046)	−0.179*** (−0.038)
3월	−0.091*** (−0.030)	−0.068 (−0.046)	−0.109*** (−0.038)
4월	−0.044 (−0.030)	−0.051 (−0.046)	−0.039 (−0.038)
5월	0.043 (−0.029)	0.044 (−0.043)	0.043 (−0.036)
6월	−0.027 (−0.029)	−0.005 (−0.043)	−0.044 (−0.036)
7월	-	-	-
상수	8.684*** (−0.022)	8.650*** (−0.032)	8.709*** (−0.027)
결정계수	0.066	0.155	0.119
관측치 수	1,990	863	1,127
업종 수	84	37	4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이며 유의도는 *** p<0.01, ** p<0.05, *p<0.1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mathrm{Ln}(R_{i,t}) = \alpha + \beta_1 D_1 \cdot T_1 + \beta_2 D_1 + \nu_i + \upsilon_t + \varepsilon_{i,t}$$

$\mathrm{Ln}(R_{i,t})$: 업종별 해당 월의 로그 매출액
ν_i: 업종고정효과
υ_t: 시간고정효과(월별)
D_1: 2020년은 1, 2017~2019년도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T_1: 2~4월은 0, 5~7월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위 추정결과를 일반적인 로그-레벨 모형의 해석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에 비해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된다고

전체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역시 함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화와 위상 확인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4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목적 모두에 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정책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석할 수 있다. 업종을 나누어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에 따른 매출액 증가 17.2% 증가에 더하여 정책에 의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는 반면, 피해 업종의 경우는 2020년에 따른 23.4%의 매출액 감소에 비해 14.2%의 매출액 증가만 확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10]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역시 함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긴급재난지원금의 설계 시 고려사항

제Ⅲ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월별 등 특성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기초통계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자금조달이나 전환대응 등에서 취약하여 긴급한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영향에 있어 업종별 이질성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업종별로 전 국민에게 일률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책패키지가 피해업종에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의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위상과 성격을 보다 재정정책 전반의 차원에서 명확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동일한 논리 선상에서 진행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정의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육하원칙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의한 사례는 드물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화와 위상 확인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4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목적 모두에 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정책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의료로 분류해 볼 때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응급의료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갖지만 응급의료 외의 의료체계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응급의료 자체가 특정 사건에 있

10) $e^{-0.082} = 0.921272$, $e^{0.0161} = 1.174685$과 같이 계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어 의료 전체를 대신하거나 의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가 야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도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명히 정의하고 유형 및 재정정책에서의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와 유형 및 재정정책에서의 위상 검토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명칭 자체의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재정당국이 (언제)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경제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재난의 극복을 돕기 위해 (누구에게) 재난 상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긴급 구제 없이는 재난 상황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체·개인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어떻게) 개인이나 사업체에 일률 또는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의 일시적 경제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대상을 돕기 위해 재정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정의되며, 다만 대상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직접효과 외에도 간접효과 등을 기대할 경우에는 전 국민 일률로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되어 현재까지의 논의를 최대한 포괄할 수 있게 된다.[11)]

다음으로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에 있어 보편과 선별에서 보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선별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도 선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맞춤형이냐 일률이냐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2.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있어 주된 지원 논리는 크게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의 일시적 경제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대상을 돕기 위해 재정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11) 참고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연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부처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내용의 긴급재난지원 성격의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지급된 새희망자금(2차), 버팀목자금(3차), 버팀목 플러스자금(4차) 제공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분류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의 전반적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2021) 자료를 참고하라.

만일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가 피해금액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손실을 보상하자는 입장과 해당 사항과 관계없이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로 손실보상의 논리를 따를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응급으로 지원한다는 피해지원의 논리라면 대기업이 제외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보상의 경우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가 피해금액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원으로도 손실보상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만일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더라도 손실보상 외 기타 피해지원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함께 합산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긴급재난지원금 피해규모의 산정 기준: 특성 집단별 평균 피해 기준 등급화

다음으로는 피해규모의 산정 시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개별 손실의 총합을 피해규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없이도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피해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는 2019년 이전의 자료로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가 도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체의 손실은 이익과 대칭에 가깝게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계산된다는 사실은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피해의 지표는 이익을 함께 고려한 총합 기준의 손실인데, 총합을 어느 단위에서 구할 것이냐에 정책적 메시지가 담긴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전체의 총합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만을 피해로 본다면, 이는 사업체가 재난 상황에서 업종-규모-지역-고유비즈니스 모델과 노력의 정도를 바꾸었을 경우 해당 금액 이상의 피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다음으로 만일 손실집계 기준을 지역과 업종, 규모로 본다면 동일한 지역, 업종, 규모의 사업체들이 입은 평균 피해는 피해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는 고유비즈니스 모델과 노력 수준의 변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업종이나 규모,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규모-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피해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본다면, 보상이 필요한 피해액 규모 기준을 사전 결정하고, 피해액 총량을 확인한 후 단계별 접근을 통해 합리적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집단별 평균 피해를 피해로 인정할 경우, 해당 집단의 피해가 확인되면 집단 내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업체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만일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사업체 중 매출이 특정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피해의 식별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난과 관계 없는 일상적인 요소나 정책적 메시지의 문제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은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싶은 집단 수준을 정하고 피해등급을 정해 등급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 설계방식은 정액방식과 비례방식 등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양측의 장점을 보완한 등급별 맞춤지원이 기본 지원형태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정액방식의 경직성 및 형평성 논란과 완전한 비례방식의 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등급화 맞춤형 설계는 내신등급, 병역등급, 연분9등법-전분6등법 등 공시적·통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방식이므로 적절히 설계할 경우 형평성과 효과성을 수용성 높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정액방식의 경직성 및 형평성 논란과, 완전한 비례방식의 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9> 규모별-업종별 등급화 방식 예시: 2020년 12월 자영업

(단위: 만원, 개)

12월 평균 매출액 감소 등위(자영업)	업종명(예시)	평균 매출액 감소	BC카드 가맹점 수	피해규모 예시 (단순 순위)
1	운송장비용연료 소매업	-428.29	18,097	상위
2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189.02	102,600	상위
3	욕탕·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서비스업	-148.21	10,530	상위
4	오락장 운영업	-147.32	49,440	상위
5	한식음식점업	-146.15	456,058	상위
6	공연시설 운영업	-105.42	1,444	상위
7	외국식음식점업	-86.52	177,838	상위
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4.31	41,999	상위
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72.42	3,450	상위
10	기관구내식당업	-45.06	1,579	상위
1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44.09	1,727	상위
12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36.00	42,174	상위
13	예술학원	-32.61	40,408	상위
14	기타 간이음식점업	-26.35	73,885	중위
15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22.19	59,668	중위
16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21.34	1,456	중위
17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20.88	757	중위
18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0.32	3,544	중위
19	사무용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20.30	20,276	중위
20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0.14	156,650	중위
21	신선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16.42	1,152	중위
22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15.41	74,995	중위
2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11.59	10,277	중위
24	의료용 기구 소매업	-8.45	902	중위
25	이용 및 미용업	-8.20	135,618	중위
26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7.81	7,716	중위
27	예술품·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6.96	10,633	하위
28	육상여객운송업	-5.71	45,902	하위
29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5.12	3,016	하위
30	전문서비스업	-3.50	42,599	하위
31	부동산업	-2.92	7,042	하위
32	방문교육학원	-2.70	786	하위
33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40	13,413	하위
34	세탁업	-1.96	22,426	하위
35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0.97	19,971	하위
36	자동차신품 판매업	-0.51	541	하위
37	운송장비 임대업	-0.11	2,725	하위
3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0.11	2,790	하위

주: 접근 방법론을 보이기 위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자영업 대상 평균BC카드 매출액 감소 등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실제로 적용할 업종을 제시한 것은 아님

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2021)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별 지원을 기본적·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개별 상황, 즉 개별 사업체가 유사 업종, 유사 규모, 유사 지역의 사업체 평균보다 더 큰 재난 피해를 입은 정당한 사유와 피해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 자료에 기반하여 보조적·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4. 긴급재난지원금 피해규모의 산정 시의 개별 고려요소 :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다음으로는 피해규모의 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사업체의 피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 감소분, 매출액과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은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고정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로부터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고에서의 자료는 전수 자료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전체 영업이익 피해규모를 다음 산식에 따라 개산(槪算)해 보기로 한다. 앞서 제시한 정책제언대로 업종과 지역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에도 해당 계산식을 준하여 활용할 수 있다.

$$\text{월별영업이익피해규모} = \text{전년동월대비매출감소액} \times \frac{1}{\text{카드점유율}} \times \frac{1}{\text{카드사용비율}} \times \text{영업이익률}$$

이에 따른 2020년 12월 자영업자 전체 영업이익 피해규모는 약 0.74조원이다.[12)]

참고로 판매·관리비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임차료의 대부분, 일부 감가상각비, 고용 총량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경우, 그리고 이자비용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서비스업의 경우 판매원가는 비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

사업체의 피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 감소분, 매출액과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은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고정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2) 매출액 감소분 1조 490억 3,500만원, BC카드 점유율 24%, 카드사용 비율 68%(한국은행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 자료), 매출액 영업이익률 12%(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 자료)를 예시적으로 활용하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확충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되,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에서 지역·규모·업종별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홀로 영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 인건비나 가족 인건비를 포함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고정비적 성격을 가지는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경제총조사 등 통계청 자료에서 업종별, 지역별 비율을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업종별 국세청 평균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향후 정책과제

우리는 이상에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정책이 피해 수준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충분히 효과를 주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도 설계와 집행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재난 발생 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설계와 집행의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의 명확화와 정책 인프라 구축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아 왔다. 일반적으로 법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자영업자와, 인원 기준으로 분류하는 소상공인 개념 자체의 통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정책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범위의 명확화는 기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조준할 수 있는 정책 대상의 정의부터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반적인 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일부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추진체계를 보아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일부 분류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

면 소상공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확충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시간 종합정보체계 구축

이번 코로나19의 긴급 피해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가장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의 재난 발생 시에도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대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고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보조 인프라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업종과 매출액에 대한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정리 자료 및 정산용 자료로 활용하되,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거나 동등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업종, 기간별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제공하여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정책 이슈인 준비되지 않은 창업, 과밀화와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의 경우 전체적인 피해의 크기보다도 비대칭적인 피해의 발생 문제가 더 심각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지역이나 업종에서의 창업은 되도록 지양하도록 하고 기존의 업체들의 업종 전환 등은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인 정부는 물론,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인 정보의 확보와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시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제공하여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정책 이슈인 준비되지 않은 창업, 과밀화와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3. 긴급재난지원 재정정책과 정규 재정정책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연계 대응

다음은 정책들의 재구조화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대응으로서 피해가 크고 피해 감수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영구적 피해를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이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규적인 재정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책도 다른 중소기업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대상별, 목적별, 수단별, 단계별로 정책을 정리하여 긴급대응 정책과 정규정책을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응급체계로서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규 정책들을 함께 관리하고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론으로서 급박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거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규모와 설계를 고려할 때 더 적합하다. 응급대응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는 지양하고 기존의 다양한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가 있었으나 응급대응의 필요성이 낮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기존의 금융지원, 공공조달시장 제공정책 등 다양한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잠재적 정책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잠재적 정책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긴급재난지원금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대응으로서 피해가 크고 피해 감수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영구적 피해를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이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규적인 재정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지급 대상에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벗어나는 경계에 있는 사업체 등 배제된 사업체에는 긴급한 지원은 없어도 정규적인 지원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규제당국과 지원당국의 업무 칸막이 완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들이 많았으나, 해당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정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방역 등의 사유로 규제가 이뤄졌을 때에는, 해당 정보가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부서에도 충분히 전달되도록 콘트롤 타워를 적절히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이상에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피해는 기간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크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주요 피해업종과 기타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업종의 경우 충분한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의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조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음을 전제하되 기존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별로 지원하여 업종이나 지역별 피해를 형평성 있게 다루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보완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본고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정정책 전반에서의 위상과 설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긴급재난 지원정책들은 전체 재정정책의 일부인 응급정책으로서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규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체의 영업지표 감소가 코로나19의 피해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담은 지역-업종-규모별 등급별 피해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긴급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정보 파악, 정책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향후 재난 발생에 있어 대응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었지만, 적절히 극복할 경우 정책적 대응체계나 정보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었지만, 적절히 극복할 경우 정책적 대응체계나 정보체계 구축, 경제의 체질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내용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책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접근방식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체계 구축, 경제의 체질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내용도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책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접근방식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하겠다. 비록 부족한 연구이지만 본고의 내용이 향후 긴급재난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설계 및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KiPF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1.

김문정·장우현,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orking Paper, 2021.

김미루·오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28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이우진·강창희·우석진,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21.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데이터베이스 2021」, 2021.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2010~2018년도 자료」, 2020.

한국은행,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홍민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제189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WHO,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검색일자: 2021. 2. 2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유세

■ 보유세 세수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분석에는 ① GDP 대비 보유세와 ②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두 가지 척도가 자주 이용됨

- GDP 대비 보유세는 경제규모 및 부담능력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
  - 보유세는 납세자의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반이 아닌 부담능력 대비 상대적인 크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GDP 대비 보유세는 GDP 대비 부동산 총액과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의 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후자는 과세기반 대비 세수의 비율, 즉 실효세율의 개념으로 부동산 총액이 다른 국가들의 보유세 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데 유용함

$$\frac{\text{보유세액}}{GDP} = \frac{\text{부동산자산 총액}}{GDP} \times \text{보유세 실효세율}^{*}$$

*보유세 실효세율 = 보유세액/부동산자산 총액

  -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실효세율이 낮더라도 GDP 대비 보유세의 비중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하여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임

- 2018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8개국 평균인 0.53%에 비해 낮음
  -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p 수준씩 상승[1)]
  - OECD 8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과 2018년이 동일
- 2018년 한국의 민간 부동산자산은 GDP의 5.3배로 OECD 8개국의 평균인 4.1배보다 높은 수준
  -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동산 총액은 2017년 5.0배에서 2018년 5.3배, 2019년 5.6배로 증가하고 있음
  - OECD 8개국의 평균은 4.1배 수준으로 2017년과 2018년이 동일

1)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더 증가할 수 있음

<표 1> OECD 8개국 보유세 비교(2018년)

(단위: %, 배)

구분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부동산 총액	GDP 대비 보유세율
호주	0.34	5.0	1.7
캐나다	0.87	3.6	3.1
프랑스	0.55[1)]	4.9	2.7
독일	0.12	3.6	0.4
일본	0.52	3.6	1.9
한국	0.16[1)]	5.3	0.8
미국	0.90	3.0	2.7
영국	0.77	4.0	3.1
OECD 8개국 평균	0.53	4.1	2.1

주: 1) 잠정치를 의미
출처: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database/, 검색일자: 2021. 3. 30.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는 주요국 및 OECD 국가 평균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는 0.8% 수준이며, OECD 8개국 평균과 37개국 평균은 각각 2.1%와 1.0%임
- 한국의 수치는 매년 0.1%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GDP 대비 부동산 총액과 보유세 실효세율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임

[그림 1] OECD 8개국 보유세 비교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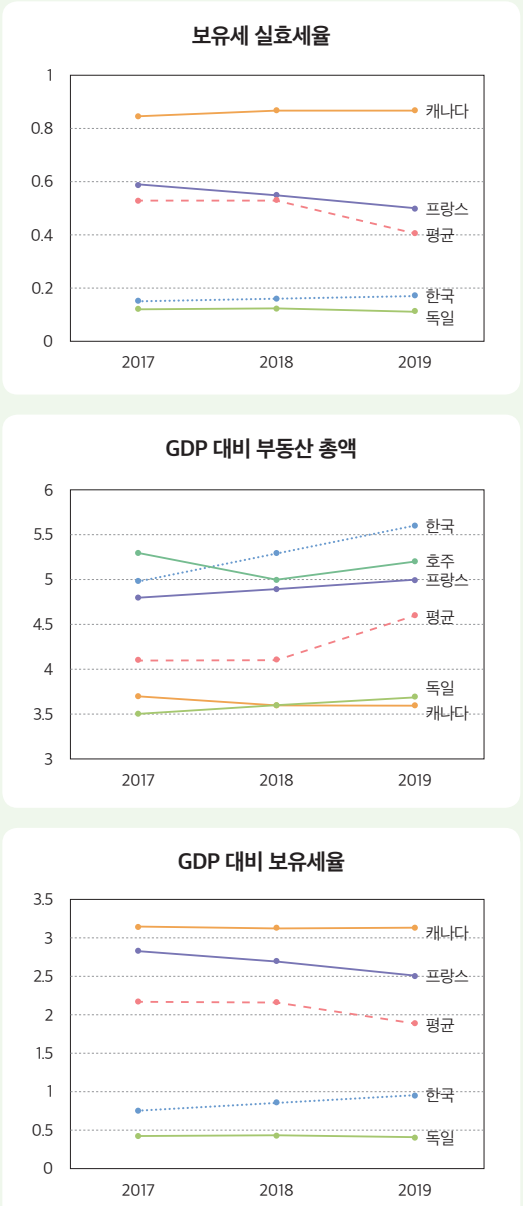

주: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OECD 8개국의 평균
출처: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database/, 검색일자: 2021. 3. 30.

거래세

※ OECD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며 나라마다 포함된 세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GDP 대비 거래세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주요국 및 OECD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는 1.8%로 OECD 주요국 및 37개국 평균(0.4%)보다 높은 수준임
- 거래세는 보유세와 같이 납세자의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능력 대비 세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보유세와 달리 매매가 이루어질 때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즉, 다른 요인이 동일할 때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세수가 증가함

■ 거래세 세수는 과세대상 범위, 세율 등 세제 외에 자산 가격, 거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짐

- 즉, 세제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자산의 가격 및 거래건수에 따라 총세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오직 세제로 인한 세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효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데, 거래세의 경우 실효세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과세기반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국가별 자료가 제한적이며,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표 2> OECD 8개국 GDP 대비 거래세 비교(2019년)

(단위: %)

구분	GDP 대비 거래세
호주	1.1
캐나다	0.3
프랑스	0.8
독일	0.5
일본	0.3
한국	1.8
미국	0.1
영국	0.7
OECD 전체 평균	0.4

주: 호주의 경우 2018년 자료를 활용함

출처: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database/, 검색일자: 2021. 3. 30.

[세율]

■ 먼저 명목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취득세율은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임[2)]

- 국가에 따라 상이한 기준(주택가격, 지역, 주택수)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하여 낮은 수준

2) 일본, 프랑스, 독일은 단일 비례 세율체계를 따름

<표 3>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세율

국가	세목	세율		
한국	취득세(부동산)[1]	1주택	1~3%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미국 뉴욕주[2]	부동산 거래세	100만달러 이하 부동산		0.4%
	맨션세	100만달러 초과 주택[3]		1% 추가
일본	부동산취득세	기본세율[4]		4%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0.4%
		소유권 이전	매매[5]	2%
			상속	0.4%
			기타	2%
독일	취득세	지역별		3.5~6.5%
프랑스	등록세	지역별		5.09~5.8%
영국	인지세	1주택자[6]		0~12%
		다주택자		3~15%

주: 1) 2020년 8월 12일 시행
2) 뉴욕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는 고가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율 인상이 적용(거래세의 경우 최대 0.65%, 맨션세의 경우 최대 3.9%)
3) 주택가격에 따라 1~3.9% 세율 적용
4) 2008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에 취득한 토지·주택은 3% 세율 적용
5) 2021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1.5% 세율 적용
6) 최초 주택 구매자가 50만파운드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30만파운드까지는 인지세를 비과세하며 30만파운드 초과 50만파운드 이하 분은 5%의 세율로 인지세를 과세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채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3% 추가 세율을 가산함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0.5%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며,[3] 뉴욕주 등은 고가주택에 대하여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함
- 그 외 프랑스의 등록세 세율은 지역에 따라 5.09~5.80% 수준이며, 영국 인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12%임[3]

● 우리나라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8~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영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이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표 3> 참조)

[거래량]

■ 거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외 요인 중 거래량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주택매매회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거래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거래세 세수에 무상취득에 대한 거래세가 포함되므로 매매거래회전율보다는 총거래회전율(증여 등 포함)로 거래세 세수를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

<표 4> 주요국의 주택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국가		2017	2018	2019	2017~2019년 평균
한국	매매회전율	5.5	4.9	4.4	4.9
	총거래회전율	8.8	8.5	7.6	8.3
영국		3.6	3.4	3.2	3.4
미국		4.5	4.3	4.3	4.4
호주		5.3	5.0	4.2	4.7
프랑스		2.7	-	-	-
네덜란드		2.8	-	-	-
스페인		2.1	-	-	-
일본		0.6	-	-	-

주: 주택매매회전율 = (주택매매거래건수 / 주택재고)
총거래회전율 = (주택취득세납부건수 / 주택재고)

출처: 1. 한국: 통계청,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1. 3. 30.;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https://www.mois.go.kr/, 검색일자: 2021. 3. 30.
2.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검색일자: 2021. 3. 30.
3. 미국: U.S. Census Bureau, Statistia, https://www.census.gov/, 검색일자: 2021. 3.30.
3. 호주: 호주 부동산 사이트, https://www.domain.com.au, 검색일자: 2021. 3. 30.
4.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European Central Bank, https://www.ecb.europa.eu/, 검색일자: 2021. 3. 30.; OECD Housing Market, http://www.oecd.org/housing/data/, 검색일자: 2021. 3. 30.
5. 일본: 기재부, 「부동산 세금 국제 비교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21. 2. 16.

3) 김지혜·노민지·오민준·권건우,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정책 Brief, 제758호, 국토연구원, 2020. 4. 6.
4) 영국은 초과누진세율을 따르며 거래가액이 12만 5천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0%, 거래가액이 15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함

다는 의견이 있는데(안성서·박지현, 2021),[5] 이를 토대로 국가 간 거래 빈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2017~2019년 평균 총거래회전율은 8.3%로 다른 국가들의 평균 매매회전율보다 2배 내외로 높음[6] (<표 4> 참조)

- 그 외에 앞에서 살펴본 높은 부동산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보임
  - 단, 특정 연도에 거래된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중과세로 저가주택

<표 5>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국가	과세방식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한국	분류과세	〈2021년 6월 1일~ 〉[1] ·장기: 2년 이상(기본세율)[2] ·단기: 2년 미만(60%), 1년 미만(70%)	6/15/24/35/38/40/42(%)
미국	단기(종합) 장기(분류)	·장기: 0/15/20% ·단기: 소득세율(다른 소득과 합산)	10/12/22/24/32/35/37(%)
일본	분류과세	·장기: 5년 이상 20.315% (소득세 15.315%, 주민세 5%) ·단기: 5년 미만 39.63%	5/10/20/23/33/40/45(%)
영국	분류과세	·소득세율 대상별 구분 – 기본세율(20%) 적용 납세자: 10% – 고세율(40%, 45%) 적용 납세자: 28%	20/40/45(%)
프랑스	분류과세	·단일세율 : 36.2% (양도소득세 19%, 사회분담세 17.2%)	0/11/30/41/45(%)
독일	종합과세	·보유기간 10년 이내의 사적양도거래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14/42/45(%) (부가세 5.5% 추가)

주: 1)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해 2021년 5월 31일까지 단기: 1년 미만(40%), 장기: 1년 이상(기본세율) 적용
2) 2년 이상 장기보유자 중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인 자는 (기본세율+30%)

5) 안성서·박지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 거래세 세부담 비교」, TIP TAX ISSUE PAPER, 3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6) 다른 국가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총액이 크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작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경우 국가별 세수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비교하기가 더욱 어려움

- 양도세 세수는 과세대상 범위, 세율 등 세제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과세대상의 분포, 과세대상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짐
- 양도세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실효세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과세기반에 대한 국가별 자료가 제한적임
- 세제 외의 요인들의 경우 모든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는 한 국가 간 세부담 비교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 세율, 비과세, 감면제도 중 특정 세제의 특성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가 간 세부담 수준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세율,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등 각 제도 요소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큼
  - 예를 들어, 국가마다 적용세율에 있어 보유주택 수, 부동산 보유기간, 과세대상자 소득수준 등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차등을 두고 있어 적용세율에 의한 세부담 비교의 타당성이 떨어짐[7] (<표 5> 참조)

종합평가

■ 본고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가 간 세부담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 기본적으로 국가 간 세부담 비교 통계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담 비교에 이용되고 있는 통계치가 국가 간 비교 목적에 미흡하기 때문
- 주로 국가별 세수 통계가 활용되고 있는데, 국가 간 세수 차이는 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간 부동산 관련 세수의 차이는 과세대상 범위, 세율 등 세제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과세대상의 분포, 과세대상 사건

7)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영국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의 소득세율 수준에 따라 적용 세율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기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함. 우리나라는 적용 세율에 차이를 두는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고려하는 것 외에 주택 수, 주택 소재지역의 성격(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수에 따라 달라짐

- 또한 국가별 세수 통계에는 자산종류별 통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8)]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하여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임

- 부담능력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GDP 대비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및 OECD 국가 평균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실효세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GDP 대비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예를 들어, 거래건수와 부동산 총액이 크더라도 저가 주택의 거래가 많다면 과세표준은 작고 실효세율은 높을 수 있음

<문의: 권성오 부연구위원>

8) 예를 들어, OECD에서 제시하는 거래세(4400)는 부동산 외에도 증권의 발행·매매·이전 관련 거래 및 차량취득과 같은 특정 법정거래 등의 거래세도 포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코로나19 관련 미국 구제 계획법 발효]

■ 2021년 3월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민 경제, 보건, 주 및 지방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호방안을 제공하는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R 1319))'에 최종 서명함[1), 2)]

■ 개인과 관련하여 2021년 과세기간 동안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및 보육 관련 비용 소득공제 등의 세금공제 적용 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함

- 1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최대 2천달러[3), 4)]를 적용하던 아동세액공제 금액을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인당 최대 3,600달러,[5)] 6세 이상 1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달러[6)]까지 인상함
- 자격 연령 및 세액공제 산출식을 수정하여 무자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적용액을 543달러[7)]에서 1,502달러[8)]까지 확대함
-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하여 비용 및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액을 2,100달러[9)]에서 8천달러[10)]로 인상하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
- 적격 납세자의 보육 관련 비용의 최대 소득공제액을 5천달러[11)]에서 1만 500달러[12)]로 인상함
- 공적 부조 공제(Premium Tax Credit: PTC)와 관련하여 2021년과 2022년에는 빈곤 소득 기준 400% 이하의 소득 상한액 요건을 폐지하고,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2~9.5%[13)]였던 납부 요율 역시 한시적으로 0~8.5%로 완화함[14)]
-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실행된 중등 과정 이후 학자금 대출은 총소득에서 제외함

1) Congress.Gov, All Information (Except Text) for H.R.1319 –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319/all-info, 검색일자: 2021. 3. 22.
2) News IBFD, "United States – COVID-19 Pandemic: President Signs Additional Pandemic Relief Legislation," 2021. 3.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3-15_us_1, 검색일자: 2021. 3. 22.
3) Investopedia, Child Tax Credit,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hildtaxcredit.asp, 검색일자: 2021. 4. 6.
4)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만 3천원임
5)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만 7천원임
6)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9만 8원임
7)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만 5천원임
8)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만 1천원임
9)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7만 8천원임
10)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6만원임
11)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6만 3천원임
12)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89만 1천원임
13) Internal Revenue Code §36B (b)(3)(A)
14)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Part 7 – Premium Tax Credit. §9661

<표 1> 미국 구제 계획법에 따른 개인 대상 세액 및 소득공제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아동세액공제	17세 미만 최대 2,000달러	6세 미만 최대 3,5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 최대 3,000달러
무자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534달러	최대 1,502달러
부양가족 세액공제	최대 2,100달러	최대 8,000달러
보육비용 소득공제	최대 5,000달러	최대 10,500달러
공적부조공제	빈곤 소득의 400% 이하 소득자 대상	소득 상한액 요건 폐지
학자금 대출 소득공제	적용사항 없음	2020. 12. 31.~2026. 1. 1. 실행된 중등 과정 이후의 학자금 대출

출처: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

■ 사업자 및 고용주와 관련하여 유급 휴가 및 고용 유지와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 혹은 확대하였으며, 일부 정부 지원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유급 병가 혹은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고용주 급여세 공제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
- 2021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 유지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2020년 2월 15일 이후 설립된 연수입 100만달러[15]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은 공제액이 분기당 최대 1만달러[16]에서 5만달러[17]로 인상됨
  - 2019년 동일 분기 수입의 10%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는 고용주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모든 임금을 적격 임금으로 처리함
-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통해 지급된 환급이 필요하지 않은 선지급금과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의 추가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제외함

■ 이외에도 본 법안을 통해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제3자 결제기관의 거래신고 의무 기준을 강화함

-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외국세액공제 한도액 산출 시 미국 및 해외 소득의 공제 배분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내국세법 Section 864 조항을 폐지함
- 제3자 결제기관(카드사, 전자결제 시스템 등)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신고 의무 기준을 기존의 연간 2만달러[18]에서 2022년부터 연간 600달러[19]로 강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15)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3,250만원임
16)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32만 5천원임
17)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62만 5천원임
18)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5만원임
19)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만원임

[영국 -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영국 재무부 장관은 2021년 3월 11일 2021년도 예산안(Budget 2021)을 의회에 제출함[20]

- 법인세 기본세율 인상,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연장, 설비기계·장치에 대한 즉시상각 한시 적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완화 조치 종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인세 기본세율을 2023년 4월 1일부터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함[21), 22)]

- 영국은 재원 확보와 자국 법인세제의 국제 경쟁력이라는 2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기본세율을 25%로 6%p 인상하기로 함
  - 영국 정부는 자국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힘
- 25%의 기본세율은 매출액이 25만파운드[23]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매출액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매출액이 5만파운드[24]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율(small profits rate) 19%를 적용함
  - 매출액이 5만파운드 이상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두기로 함
- 영국 정부는 약 70%의 기업에 세율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함

■ 2020/21, 2021/22년도에 발생한 사업결손(trade loss)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함[25]

- 기존 제도는 사업결손을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전년도로 소급(carried-back)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ied-forward)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해왔음
- 2020/21년도와 2021/22년도에 발생한 사업결손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2년 더 추가하여 3년으로 연장함
  - 2021년도 예산안은 소급공제에 대해서만 임시조치를 두고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를 두지 않음
  - 결손금 소급공제를 전년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되, 전전년도와 전전전년도에 적용하는 경우 연간 200만파운드[26]를 한도로 함

20) 영국 정부, "Budge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budget-2021-html, 검색일자: 2021. 3. 19.
21) 영국 정부, "Budge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budget-2021-html, 검색일자: 2021. 3. 19.
22) KPMG UK, "Corporation tax rate to increase to 25 percent,"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03/tmd-corporation-tax-rate-to-increase-to-25-percent.html, 검색일자: 2021. 3. 15.
23)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994만원임
24)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798만원임
25)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5. Losses(Last Reviewed: 3 March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uk_s_1.5.1.#gtha_uk_s_1.5.2, 검색일자: 2021. 3. 18.
26)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억원임

■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규 투자한 설비기계·장치에 대해 130% 또는 50%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기로 함[27)]

● 영국은 설비·기계장치를 종류에 따라 기본그룹과 특별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각각 18%, 6%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제도를 운영해왔음[28)]

- 기본그룹(main rate pool)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설비·기계장치를 포함함
- 특별그룹(special rate pool)은 내용연수가 장기(25년 이상[29)])인 것, 건물·구조물의 일부인 종합구조물 등을 포함함

●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진작하기 위해 기본그룹에 대해서는 130%(기존 18% 적용 대상), 특별그룹에 대해서는 50%(기존 6% 적용 대상)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한도 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

- 동 특례는 해당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중고품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숙박·관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시 감면 조치를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함[30), 31)]

● 2020년 7월 8일부터 숙박·관광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5%의 세율로 과세하는 감면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동 조치는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함

● 또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추가 감면 조치를 도입함

● 2022년 4월 1일부터는 기존과 같이 20%의 표준세율로 과세할 예정임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과세 기준을 2020년 7월부터 일시 완화하였으나 2021년 10월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기로 함[32), 33)]

●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는 잉글랜드·북아일랜드에서 일정 한도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거래세임

27) 영국 정부, New temporary tax reliefs on qualifying capital asset investments from 1 April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ew-temporary-tax-reliefs-on-qualifying-capital-asset-investments-from-1-april-2021/new-temporary-tax-reliefs-on-qualifying-capital-asset-investments-from-1-april-2021, 검색일자: 2021. 3. 18.
28) 영국 정부, "Work out your capital allowances," https://www.gov.uk/work-out-capital-allowances/rates-and-pools, 검색일자: 2021. 3. 18.
29) 영국 「자본공제법(Capital Allowances Act 2001)」, Section 91
30) IBFD, "United Kingdom Extends 5% Reduced VAT Rate for Hospitality Industry Through September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3-04_uk_4#tns_2021-03-04_uk_4, 검색일자: 2021. 3. 18.
31) 영국 정부,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rate of VAT for hospitality, holiday accommodation and attracti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a-new-reduced-rate-of-vat-for-hospitality-holiday-accommodation-and-attractions/introduction-of-a-new-reduced-rate-of-vat-for-hospitality-holiday-accommodation-and-attractions, 검색일자: 2021. 3. 18.
32)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검색일자: 2021. 3. 18.
33) 영국 정부, Extension of the temporary increase to the Stamp Duty Land Tax nil rate band for residential properti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tension-of-the-temporary-increase-to-the-stamp-duty-land-tax-nil-rate-band-for-residential-properties/extension-of-the-temporary-increase-to-the-stamp-duty-land-tax-nil-rate-band-for-residential-properties, 검색일자: 2021. 3. 19.

<표 2>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

(단위: %, 파운드)

~2020. 7. 7.		2020. 7. 8.~2021. 6. 30.		2021. 7. 1.~2021. 9. 30.		2021.10.1.~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125,000	0	~500,000	0	~250,000	0	~125,000	0
125,001~250,000	2					125,001~250,000	2
250,001~925,000	5	500,001~925,000	5	250,001~925,000	5	좌동	5
925,001~1,500,000	10	좌동	10	좌동	10	좌동	10
1,500,000 초과	12	좌동	12	좌동	12	좌동	12

출처: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검색일자: 2021. 3. 18.

<표 3> 영국의 개인소득세

(단위: %, 파운드)

구간	세율	과세기준 금액		
		2020/21	2021/22	2022/23~2025/26
기본공제액	0	12,500	12,570	좌동
기본세율	20	12,501~50,000	12,571~50,270	좌동
고세율	40	50,001~150,000	50,271~150,000	좌동
추가 세율	45	150,000 초과	좌동	좌동

출처: 영국 정부, Income 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ttps://www.gov.uk/guidance/income-tax-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1. 3. 18.

-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크게 침체하자 영국 정부는 2020년 7월 8일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1개의 과세구간 및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시적 완화 조치를 도입함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 12만 5천파운드[34]에서 50만파운드[35]로 인상했으며 과세구간을 기존 5단계(0%, 2%, 5%, 10%, 12%)에서 4단계(0%, 5%, 10%, 12%)로 조정했음
- 영국 정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새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중 약 90%가 인지세 전액을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함[36]
- 2021년 10월 1일부로 완화 조치를 전면 종료하고 다시 기존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본래 4월 1일부터 완화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

34)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490만원임
35)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7,972만원임
36) 영국 정부, "Budge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budget-2021-html#fnref:129, 검색일자: 2021. 3. 19.

었으나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용 부동산 관련 사업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 과세기준 금액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25만파운드,[37] 2021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과 같은 12만 5천파운드로 함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21년 4월 6일부터 1만 2,570파운드,[38]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을 5만 270파운드[39]로 인상하기로 함[40]

● 세율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2025/26년까지 적용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서현 연구원>

[아일랜드 -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임시 인하 종료]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2021년 2월 9일,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임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41]

● 아일랜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3%에서 21%로 임시 인하하였음

- 아일랜드는 13.5%, 9%의 2가지 경감세율을 두고 있는데, 동 기간 내에 경감세율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음[42]

● 임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2021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동일한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재무부 장관은 표준세율을 임시로 인하하기로 한 당시 정책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제(Covid Restrictions Support Scheme: CRSS)를 구축하였기에 재무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힘[43]

■ 단, 숙박서비스업과 여행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임시 인하 조치는 원안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함[44]

● 숙박서비스업, 여행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37)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986만원임
38)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0만원임
39)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40만원임
40) 영국 정부, "Income 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ttps://www.gov.uk/guidance/income-tax-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1. 3. 18.
41) RTE(Ireland's National Public Service Media), "No plans' to extend reduced VAT rate, Donohoe says," https://www.rte.ie/news/business/2021/0209/1196095-no-plans-to-extend-reduced-vat-rate-donohoe-says/, 검색일자: 2021. 3. 16.
42) 그밖에 단일세율 구조를 적용받는 농부, 가축에 대해 5.4%와 4.8%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나 생략함(아일랜드 재무부, Current VAT rates, https://www.revenue.ie/en/vat/vat-rates/search-vat-rates/current-vat-rates.aspx, 검색일자: 2021. 3. 30.)
43)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제(Covid-19 Restrictions Support Scheme: CRSS)는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어 소득이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최대 5천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임(아일랜드 정부, Covid Restrictions Support Scheme(CRSS), https://www.revenue.ie/en/self-assessment-and-self-employment/crss/index.aspx, 검색일자: 2021. 3. 18.)
44) RTE(Ireland's National Public Service Media), "No plans' to extend reduced VAT rate, Donohoe says," https://www.rte.ie/news/business/2021/0209/1196095-no-plans-to-extend-reduced-vat-rate-donohoe-says/, 검색일자: 2021. 3. 16.

이전에는 13.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45)]

<자료수집 및 조사: 이서현 연구원>

[독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세제지원법안 의결]

■ 독일 연방국회는 2021년 2월 26일 제3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Drittes Corona-Steuerhilfegesetz) 안을 의결함[46)]

- 본 법안은 최종적으로 2021년 3월 17일 공포됨[47)]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특히 피해를 입은 특정 업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식업과 돌봄서비스업종(Restaurant-und Verpflegungsdienstleistungen)에 대해 19%에서 7%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제1차 코로나19 조세지원법으로 7%로 인하된 뒤, 제2차 지원법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로 완화된 바 있음
- 2021년도에 대한 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상한액 또한 개인과 부부에 대하여 각각 500만유로[48)]에서 1천만유로,[49)] 1천만유로에서 2천만유로[50)]로 확대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진수 연구원>

[독일 -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 연방내각 통과]

■ 독일 연방내각은 2021년 3월 24일 연방재무부가 발의한 「담배세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Tabaksteuergesetzes)을 의결하여 연방참사원에 송부함[51)]

-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에는 2022~2027년까지의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와 기존 담배세 인상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담배세의 과세 대상이라 함은 궐련, 엽궐련, 각련, 파이프담배를 말함
- 전자담배(erhitzter Tabak)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파이프담배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mg단위인 니코틴 소모 물질에 대하여 kg단위로 과세되어 세

45)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Donohoe announces Tourism and Hospitality VAT Rate to move to 9% on Sunday,” https://www.gov.ie/en/press-release/a773d-minister-donohoe-announces-tourism-and-hospitality-vat-rate-to-move-to-9-on-sunday/, 검색일자: 2021. 3. 16.

46) 독일 연방재부무, “Drittes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 ltigung der Corona-Krise (Drittes Corona-Steuerhilfegesetz),”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3-17-Drittes-Corona-Steuerhilfegesetz/4-Verkuendetes-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1. 3. 18.

47) 기민(여당)/기사당 및 사민당으로 이루어진 재정위원회(Finanzausschuss)에서 발의함

48)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억원임

49)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억원임

50)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8억원임

51) 독일 연방정부, “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Tabaksteuergesetzes,” 독일의 담당행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을 담당부서안(Referentenentwurf)이라고 함. 내각심의-연방참사원-연방의회-다시 연방참사원을 거쳐 통과되면 법률로 확정됨.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themen-im-bundeskabinett-ergebnisse-1880224, 검색일자: 2021. 3. 24.

<표 4>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을 통한 예상세수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상세수	12억 4,300만유로	17억 9,500만유로	25억 6,500만유로	30억 3,900만유로	35억 3,800만유로
	약 1.6조원	약 2.4조원	약 3.4조원	약 4.5조원	약 4.7조원

출처: 독일재무부,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 연방정부안,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II/19_Legislaturperiode/2021-03-24-TabStMoG/2-Regierungsentwurf.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1. 3. 24.

수가 현저하게 낮았음

- 개정 전 니코틴 물질은 1kg당 1만 566유로[52]에 추가적으로 소매가격의 13.13%가 과세되며, 최소세율은 1kg당 22유로[53]임

● 정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세수 확대, 담배세수의 예측 정확성 확보, 니코틴 소비 감소를 통한 공중보건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 전자담배가 특히 밀수, 개인반입 등으로 징세가 어려운 각련에 대한 대체재로 유력하기 때문에 세입 증대와 세입집계가 정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22년부터 약 12억 4,300만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와 기존 담배에 대한 점진적 세율 인상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전자담배(erhitzter Tabak, 신규)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담배세율이 적용되며 파이프담배 세율에 추가적으로 궐련담배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파이프담배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의 차이를 합산한 값임

- 2022년 7월 1일부터는 소모품으로 쓰이는 니코틴 물질에 또한 추가적인 소비세가 부과됨
- 니코틴 물질에 부과되는 세율은 2023년까지 0.02유로[54]/mg, 2024년부터 0.04유로[55]/mg가 적용됨

● 궐련(Zigaretten)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개피당 9.82센트[56]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21.69%를 부과하던 것을 2027년 2월 14일 이후부터는 최종 목표세율인 1개피당 11.11센트[57]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21.44%를 부과하는 것임

● 엽궐련(Zigarren und Zigarillos)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개피당 1.4센트[58]에

52)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원임
53)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원임
54)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원임
55)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원임
56)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원임
57)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원임
58)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원임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47%를 부과하던 것은 유지하나 1개피당 5.76센트[59]였던 최소세율을 2023년 1월 1일부터 7.504센트[60]로 인상하는 것임

- 각련(Feinschnitt)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kg당 48.49유로[61]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4.76%를 부과하던 것을 2027년 2월 14일부터 최종 목표세율인 1kg당 57.60유로[62]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7.26%를 부과하는 것임
- 파이프담배(Pfeifentabak)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kg당 15.66유로[63]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3.13%를 부과하는 것은 유지되나 1kg당 22유로인 최소세율을 2023년 1월 1일부터 26유로[64]로 인상하는 것임

<자료수집 및 조사: 박진수 연구원>

[프랑스 - 과세관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2월 11일 법령(Décret 2021-148)을 제정하여 과세관청에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65]

- 프랑스 과세관청은 소셜미디어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도 예산안에 처음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여 2021년 법령화한 것임

■ 과세관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적으로 허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료로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잠재적인 조세포탈을 방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새로운 권한은 과세관청이 수집 데이터의 성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텍스트, 이미지, 사진, 비디오 및 기타 개인이 인터넷에 표현한 여러 유형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과세관청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직업활동 수행 또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데이터까지 포함됨
- 과세관청은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등의 경우 거주지와 일치 여부를 위하여 개인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 위반으로 결정할 수 있음

59)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6원임
60)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원임
61)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5천원임
62)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7천원임
63)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원임
64)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4천원임
65) 프랑스 법률정보시스템 Lé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129895, 검색일자: 2021. 3. 22.; Tax Notes International, “French Tax Authorities Can Use Social Media Data to Catch fraud,” Volume 101, March 15, 2021, pp.1445~1446.

■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정보 보유기간이 상이하며,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데이터에는 과세관청의 접근 권한이 없음

- 민감하거나 관련 없는 데이터가 우연히 수집된 경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파기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보안 서버에 수집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저장되며, 기타 다른 데이터는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에 파기됨[66)]
  - 다만, 형사 및 관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음
-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데이터가 비밀번호로 보호되거나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계정을 생성하여야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

■ 법령 제정 이전과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과거에도 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 기술 및 도구 등을 개발해 왔음

- 법령 제정 이전에 과세관청은 과세관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만 사용할 수 있었음
  - 은행계좌 파일, 자산, 생명보험 계약서 등
  - 기타 프랑스 정부 기관 또는 국외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파일
- 과세관청은 2013년 이후로 데이터 수집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왔으며, "위험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평가"라고 불리는 자동화된 사기 방지 처리 절차를 운영해 왔고, 과세관청, 데이터베이스, 기타 무료 접근 가능한 저장매체로부터 조세 관련 데이터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음

■ 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과세관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접근권을 규정한 2020년도 예산안[67)]은 프랑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된 바 있음
- 법령의 실행으로 여전히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제한은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정당하고 비례적"이라고 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룩셈부르크 -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신규 발간]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신규 제도에 대한 지침을 발간함[68)]

- 특히 기업과 소비자(B2C) 간의 EU 내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규정의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음

66) Décret n° 2021-148 du 11 février 2021 제8항
67) 프랑스 법률정보시스템 Légifrance, "LOI n° 2019-1479 du 28 décembre 2019 de finances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39793153/, 검색일자: 2021. 3. 22.
68) Portail de la Fiscalité Indirecte, https://pfi.public.lu/fr/actualites/2020/OSSnr.html, 검색일자: 2021. 3. 29.; News IBFD, "Luxembourg Explains New VAT Rules on eCommerc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0_lu_1.html, 검색일자: 2021. 3. 22.

- 2015년부터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 용역 제공에만 적용되었던 VAT MOSS(Mini One-Stop-Shop)의 적용범위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한 것임

■ 지침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가능한 국가 등을 규정하고, MOSS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인 변경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함

-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소비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납부되어야 하며, 1만유로[69] 이하의 부가가치세는 공급 기업이 설립된 EU 회원국에서 납부할 수 있음
- 통합된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와 용역의 역외 운송에도 적용되며, 간소화되고 통합된 시스템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적용되며, VAT OSS(One-Stop-Shop)[70]를 통하여 EU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지침에 따르면, MOSS의 확장된 적용범위는 모든 유형의 역외 용역 및 원거리 상품 판매에도 적용됨

- MOSS의 적용범위는 EU 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역외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행되는 EU 내 원거리 판매와 특정 국내 판매에도 적용될 것임
- 새롭게 적용되는 수입 MOSS 제도는 운송을 통하여 제3국에서 수입된 150유로[71]를 초과하지 않는 원거리 상품 판매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상품의 수입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

■ MOSS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VAT MOSS 도입 이후에도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능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의 전자 신고 및 납부가 납세자가 등록한 EU 회원국의 MOSS를 통하여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함
  - 모든 MOSS의 거래 내역은 10년간 보유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22유로[72] 이하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지됨
- VAT MOSS의 적용범위 확장의 결과 기존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작용하며,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정한 기능은 계속해서 적용됨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정
  -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EU 역외 또는 EU에 용역 공급과 관련한 지불
  - OSS 서비스 제공

69)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32만원임
70) MOSS 이전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 프로그램임
71)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 9천원임
72)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9천원임

<표 5> 추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단위: 유로)

구분	연간 과세소득	추가 공제금액
2021년	28,000 이하	1,200
	28,000~35,000	960 + 240 × [(35,000 − 과세소득) / 7,000]
	35,000~40,000	960 × [(40,000 − 과세소득) / 5,000]
2020년	28,000 이하	600
	28,000~35,000	480 + 120 × [(35,000 − 과세소득) / 7,000]
	35,000~40,000	480 × [(40,000 − 과세소득) / 5,000]

출처: 독일재무부,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 연방정부안,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II/19_Legislaturperiode/2021-03-24-TabStMoG/2-Regierungsentwurf.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1. 3. 24.

■ EU는 2021년 전자상거래(통신, 방송, 전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도입하였고,[73]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의 지침은 이를 반영한 것임

- 유럽위원회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판매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의무를 단순화하고자 노력하고, 위원회는 두 단계로 나누어 법안 도입 결정을 내림
  - 1단계: VAT MOSS 도입
  - 2단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플랫폼 등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거리 판매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이탈리아 - 추가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수정안 제정]

■ 이탈리아 국회는 2021년 3월 2일, 개인 소득세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 공제 조치를 시행령 제183/2020호(Decree No. 183/2020)으로 제정함[74]

-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 법령으로 제정된 2021년 예산안에 추가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시행령 제21/2020호에 의한 기본 근로소득 공제액보다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음[75]
  -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26일 법률 제21호와 함께 2021년 3월 1일 관보 제51호에 게재되었음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랑 관세사>

73)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sites/default/files/taxud-2013-01228-02-01-en-ori-00-en.pdf, 검색일자: 2021. 3. 29.
74) News IBFD, "Parliament Enacts Amendments to Additional Earned Income Credi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05_it_1.html, 검색일자: 2021. 3. 17.
75) News IBFD, "Earned income credits amendments enacte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4-06_it_1, 검색일자: 2021. 4. 5.

[포르투갈 - 항공 및 해상여행에 새로운 탄소세 시행]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2월 16일, 항공과 해상 여행에 적용되는 탄소세(Carbon tax, Ordinance No. 38/2021)를 신설함[76)]

- 탄소세는 상업용 항공편과 여객선에 승객 1인당 2유로로 산정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과세됨

■ 항공 여행에 대한 탄소세 부과 대상은 포르투갈 영토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승객이며, 탄소세 징수 방법은 탄소세를 해당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여 항공사가 대신 징수하는 형태임

- 항공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포르투갈 관할 당국(ANAC)에 징수한 탄소세를 전달해야 함
- 탄소세가 면제되는 승객 또는 항공편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만 2세 이하의 어린이, 목적지가 마데이라 및/또는 아조레스 자치구인 여객기
  - 기술적, 기상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포르투갈 영토에 강제 착륙한 승객
  - 공공서비스 의무에 따른 여객 항공편

■ 해상 여행에 대한 탄소세 부과 대상은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여객선으로 포르투갈 본토에 위치한 터미널에 양륙할 때 승객에 대해 부과하며, 탄소세 징수방법은 여객선의 연료와 보수(reparing) 시 및/또는 승객들의 승선 또는 하선 시 탄소세를 여행가격에 포함시켜 선박회사가 징수함

- 선박회사는 여객선이 항구를 사용한 후 즉시 징수된 탄소세를 포르투갈 항구 당국으로 전달해야 함
- 탄소세가 면제되는 승객 또는 여객선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만 2세 이하의 어린이
  - 승무원 교체를 전용으로 하는 입항 여객선
  - 부상자나 사망자의 하선
  - 구조된 사람 및 의료행위가 필요한 승무원 또는 그러한 승객의 입항을 위해 입항하는 여객선
  - 포르투갈 법률로 정한 로로선(Role On Role Off ship)
  - 강 수송(river transport)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랑 관세사>

[덴마크 - 탈탄소화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1년 2월 24일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초안을 발표함[77)]

- 탄소 절감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자산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를 상향 조정함

76) News IBFD, "Government Implements New Carbon Tax on Air and Sea Trave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03_pt_1.html, 검색일자: 2021. 3. 18.
77) News IBFD, "Denmark Proposes Measures To Support Business Decarboniz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25_dk_1.html, 검색일자: 2021. 3. 19.

- 기업이 기계장치 등 새로운 녹색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한도를 기존 1만 4,100덴마크크로네[78]에서 3만 덴마크크로네[79]로 인상함
-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운영 투자의 경우, 4년의 내용연수 동안 최대 취득가액의 116%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함
- 화석연료 사용 기계장치, 승용차 및 선박은 관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탄소저감 기술 등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출액의 130%까지 공제할 수 있음

● 저탄소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집약 업종 기업의 경우, 유황세 부과 시 최저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되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 계획 초안 발표]

■ 중국 지도부는 2021년 3월 4일에 개최된 제13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의 제4차 회의에서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초안을 발표함[80]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국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산업고도화를 위한 발전을 추구할 예정임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는 증치세[81] 면제 및 세율 인하, 기업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편안이 포함됨[82]

● 소규모 납세자(Small-Scale Taxpayers)의 증치세 면제 월매출액 한도를 10만위안[83] 이하에서 15만위안[84] 이하로 5만위안[85] 인상하고[86] 소규모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 기본세율을 3%에서 1%로 낮춤[87]

-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78) 2021년 3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만원임
79) 2021년 3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5만원임
80)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top political advisory body starts annual session," http://english.www.gov.cn/news/topnews/202103/05/content_WS60416b72c6d0719374af9fc0.html, 검색일자: 2021. 3. 18.
81) 증치세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용역,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 또는 제공할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임
82)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ort on china's national ecoomic, social development plan," http://english.www.gov.cn/news/topnews/202103/13/content_WS604cb18dc6d0719374afacb6.html, 검색일자: 2021. 3. 22.
83)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천 700만원임
84)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천 500만원임
85)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0만원임
86) China Taxation Administration, "国家税务总局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59/c5162926/content.html, 검색일자: 2021. 4. 5.
87) IBFD, "China Extends Tax Incentiv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25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납세자로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위안[88] 이하(월 매출액 약 41만 6천위안[89] 이하)일 경우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됨

- 소규모 납세자가 월매출액 15만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증치세가 면제되나, 월매출액이 15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증치세 기본세율 1%가 적용됨
- 인상된 증치세 면제 월매출액 한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인하된 증치세 기본세율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90] 미만인 영세·소형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의 기업소득세율을 50% 인하함[91]

- 연간 과세소득이 300만위안[92] 미만,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자산 총액 5천만위안[93] 미만을 충족할 경우 영세기업에 해당됨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미만인 적격 영세기업은 기업소득세율을 5%에서 2.5%로 인하함

<표 6> 영세·소형기업 기업소득세율

(단위: %)

연간 과세소득	발표 전 적용세율	발표 후 적용세율
100만위안 미만	5	2.5
100만위안 이상~300만위안 미만	10	
300만위안 이상	25	

출처: IBFD, "China Announces Various Tax Changes in Working Plan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8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IBFD, Tax incentives for small low-profit enterprises expand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1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 산업고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디지털경제 과세원칙 수립, 수입세 조정 등의 세제혜택을 개편할 예정임[94]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실시함

-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100%, 다른 업종의 연구개발비에는 75%의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됨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임

●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고 디지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원칙 등 국제적인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세를 조정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율 연구원>

88)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6천만원임
89)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천만원임
90)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천만원임
91) IBFD, "China Announces Various Tax Changes in Working Plan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8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92)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1천만원임
93)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억 2천만원임
94) IBFD, "China Announces Various Tax Changes in Working Plan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8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0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ON THE 2021 DRAFT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p. 34~52.

[홍콩 - 2021~2022년 예산안 발표]

■ 홍콩 재무부는 2021년 2월 24일에 2021~2022년 예산안(The 2021-22 Budget)을 발표함[95)]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안정(Stabilising the Economy)과 국민의 부담완화(Relieving people's burden)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코로나19 극복(Overcoming the Epidemic)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됨[96)]

- 2020~2021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세(Profits tax) 세액감면이 최대 1만홍콩달러[97)] 한도로 가능함
  - 사업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홍콩 정부 수입이 10억 5천만홍콩달러[98)] 절감되지만, 12만 8천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1~2022년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갱신비용을 면제함[99)]
  - 사업자등록 갱신비용은 2020~2021년 과세기간 기준으로 매년 갱신일 경우 2,250홍콩달러,[100)] 3년 갱신일 경우 3,950홍콩달러[101)]임
  - 사업자등록 갱신비용 면제로 홍콩 정부 수입이 30억홍콩달러[102)] 절감되지만, 약 150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0~2021년 과세기간의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세액감면이 최대 1만홍콩달러 한도로 가능함
  - 급여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홍콩 정부 수입이 114억홍콩달러[103)] 절감되지만, 187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Building a Liveable City)와 관련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안이 포함됨[104)]

- 홍콩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Private Car)의 자동차최초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 FRT)[105)]를 15% 인상함
- 또한, 홍콩 정부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연료로 구동되는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일대일교체(One-for-One Replacement)제도를 시행함

95) 홍콩 재무부, *THE 2021-22 BUDGET,* https://www.budget.gov.hk/2021/eng/pdf/e_budget_speech_2021-22.pdf, 검색일자: 2021. 3. 22.
96) 홍콩재무부, *THE 2021-22 BUDGET*, pp. 9~15.
97)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5만원임
98)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32억 2천만원임
99) Inland Revenue Department,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검색일자: 2021. 3. 25.
100)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101)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만원임
102)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76억 7천만원임
103)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632억원임
104) 홍콩재무부, *THE 2021-22 BUDGET*, pp. 47~55.
105) 자동차최초등록세란, 홍콩에서 자동차 구입 후 최초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다름

-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연료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폐차한 적격한 소유자에게 최대 28만 7,500홍콩달러[106] 한도로 자동차최초등록세를 지원함
- 전기차동차만 구입한 경우 최대 9만 7,500홍콩달러[107] 한도로 자동차최초등록세를 지원함

■ 국제 조세 협력(International Tax Co-operation)과 관련하여 홍콩 정부의 BEPS 2.0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함[108]

● 홍콩은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로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 BEPS 2.0 제안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임

- BEPS 2.0에 따른 대부분의 규칙은 다국적 대기업에만 적용되므로 대응 조치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현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세제도의 단순성(Simplicity), 확실성(Certainty), 공정성(Fairness)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홍콩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임
-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홍콩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치율 연구원>

[OECD - BEPS Action 5에 관한 2021-2025 상호 검토 절차 발표]

■ 2021년 2월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는 Action 5(유해 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투명성 체계(Transparency Framework)에 관한 상호 검토 절차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을 발표함[109]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의 15개 Action 중에서 BEPS 참여국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최소 기준임[110]

- 최소 기준은 적시에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상호 검토를 수행함

● Action 5의 투명성 체계는 BEPS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납세자별 판결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요구함

● 해당 상호 검토 절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됨

106)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천 196만원임
107)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천 422만원임
108) 홍콩재무부, *THE 2021-22 BUDGET*, p. 64.
109) OECD, "OECD agrees new peer review process to foster transparency on tax rulings," http://www.oecd.org/tax/beps/oecd-agrees-new-peer-review-process-to-foster-transparency-on-tax-rulings.htm, 검색일자: 2021. 3. 23.; OECD, Action 5 Harmful tax practices, http://www.oecd.org/tax/beps/beps-actions/action5/, 검색일자: 2021. 3. 23.;EY, "OECD releases new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5 for 2021 through 2025,"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21-5238-oecd-releases-new-transparency-framework-for-action-5-for-2021-through-2025, 검색일자: 2021. 3. 22.
110) 그 외 최소 기준으로는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가 있음

■ 상호 검토 절차는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유해조세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FHTP)에 의해 수행됨

- 평가 기준은 정보수집 절차, 정보 교환, 정보 비밀 유지, 통계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며, 방법론은 관련 자료 수집 절차, 보고서 준비 및 승인, 수정 및 해석, 검토 보고서의 기밀성 유지 등을 포함함

■ 평가 기준의 정보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관할권은 조세예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범주 및 각 범주의 조세예규에 관한 식별이 필요함

- 관할권은 BEPS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래의 범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특정 조세우대제도에 관한 예규
  - 이전가격에 관한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APA) 또는 역외거래에 대한 예규
  - 과세이익을 하향 조정시키는 국제거래에 관한 예규
  - 고정사업장에 관한 예규
  - 특수관계인 및 도관에 관한 예규
- 관할권은 각 범주의 과거/미래 예규을 식별해야 하며, 과거/미래 예규의 정의는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은 OECD/G20 국가, BEPS 포괄적 이행체계 신규 가입국가, 개발도상국가 등으로 구분됨

■ 평가 기준의 정보 교환 요소와 관련하여, 관할권은 투명성 체계 범주 내의 조세예규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야 하며, 아래의 항목이 요구됨

- 정보의 자발적 교환 및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국내 법적 체계를 보유함
- 예규에 관한 정보가 과도한 지연 없이 국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관할 당국에 전달되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설치함
- 과거 예규에 관하여 가능한 빠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미래 예규에 관하여 관할 당국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EU - EU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 유럽의회 승인]

■ 2021년 3월 10일 유럽의회는 디지털 거래 과세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111)]

111) 유럽 의회, "Better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on taxation of digital trading,"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0304IPR99217/better-cooperation-between-national-authorities-on-taxation-of-digital-trading, 검색일자: 2021. 3. 22.;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0 March 2021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COM(2020)0314 C9-0213/2020 2020/0148(CNS)),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1-0072_EN.html, 검색일자: 2021. 3. 22.

-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회원국에 보고해야 하고, 세무 당국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의무가 있음

■ 비EU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EU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 회원국에 플랫폼을 등록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얻은 수입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 플랫폼 등록 시 비EU 온라인 플랫폼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는 회원국에 등록해야 함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은 EU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보 요청 시 세무당국은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정보 요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용 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회원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전달해야 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정보 교환의 효과성을 포함하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국가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22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무당국에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제3국과 새로운 이전가격 사전합의(양자 또는 다자간)를 할 수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코로나19 위기 1년 후 EU 차원의 재정정책 운용 조정(일반면책조항 유지 여부 등) 논의를 이사회에 전달(2021. 3. 3.)[1]

- (배경)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EU 안정성장협약[2]의 재정준칙 준수 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일반면책 조항[3] 적용으로 회원국이 보다 유연한 재정정책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집행위의 의견을 제시
- (경제·재정 상황 및 대응)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EU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대응을 시행하여 경제 및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켰으며, 경기 침체 대응과 긴급 재정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
- (재정정책 방향) 2021년과 2022년에 유지가 필요한 재정지원의 이른 철회를 경고하는 바이며,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하면 지속가능한 회복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인 재정 조치로 점차 전환해야 함
- (일반면책조항 유지 여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관한 정량적 기준으로 재정준칙 면책조항의 유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주요 양적 기준으로 위기 이전 수준(2019년 말)과 경제 수준을 비교할 가능성이 높음

■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4] 2020 발표(2021. 2. 26.)[5]

※ 동 보고서는 EU 공공 재정에 관한 주요 재정정책 동향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음. 아래 내용은 1장 EU의 경제·재정 상황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정리함[6]

-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2020년 EU 경제성장률은 2021년 2월 겨울 전망 기준 약 7%

1) EU 집행위,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One year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fiscal policy response, 2021. 3. 3.,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1_en_act_part1_v9.pdf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Communication on fiscal policy response to coronavirus pandemic, 2021.3.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885

2)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는 유럽연합(EU)의 EU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가입국의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GDP 대비 3%, 일반정부 채무 상한선을 GDP 대비 60% 정하고 있으며, 약간의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있으나, 이를 넘어설 경우 판단을 거쳐 교정적 조치(corrective arm)가 시행됨. 그 외의 국가는 중기재정목표 기준의 예방적 조치(preventive arm)를 적용함

3) 2020년 3월 23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유로지역 혹은 EU 전체의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이라고 보아 EU 재정프레임워크의 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EU 재정준칙 준수 의무의 일시적인 중단을 합의함(EU 규정: Regulation (EC)1466/97, Articles 5(1) and 9(1) – "in periods of severe economic downturn for the euro area or the Union as a whole, Member States may be allowed temporarily to depart from the adjustment path towards the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endanger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medium term")

4)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동맹

5)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0, 2021. 2. 26.,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0_en

6)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0은 제1~4장으로 이뤄져 있음. 제2장에서는 EU 재정 감독 동향(일반 면책조항 적용,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친환경 예산(green budgeting),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차이(이자율-성장률)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정부채무 운용에 관한 시사점,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에서 EU 재정준칙 효과성에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 연구로 구성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향후 게시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https://www.kipf.re.kr/cfa/index.do)

[그림 1] 유로지역의 연간 정부채무 및 재정수지 변화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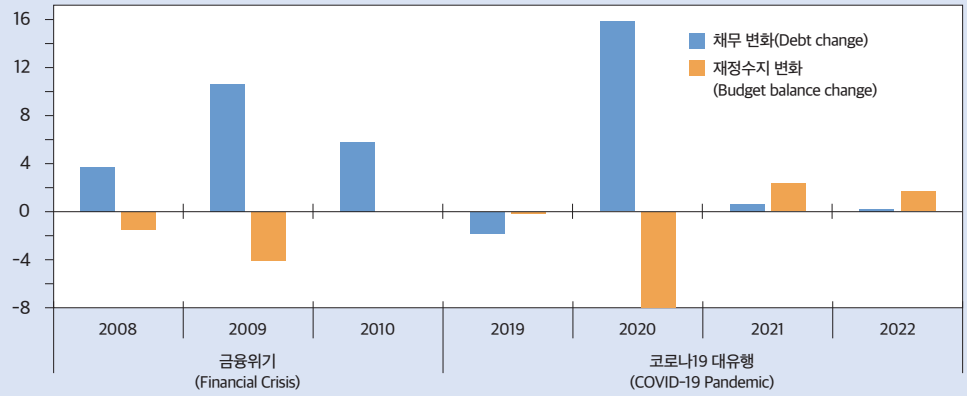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0*, 2021, Graph I.1.4

감소하였고, 일반정부 적자는 2009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증가 규모가 훨씬 큼([그림 1] 참조)

- (경제성장률) 2020년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6.8%이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3.8%로 반등할 전망이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2022년 중반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가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유로지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8.8%로 전년 대비 약 8%p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절반은 자동안정화장치, 나머지는 보건 및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재량 재정 조치로 인함
- (재정기조) 2014~2019년 동안 유로지역은 재정중립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0년과 임시 비상 조치를 줄여나갈 계획인 2021년에도 확장 기조 전망
  - 2021년 예산안에서는 임시 비상 조치를 2021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가정
  - 임시 조치를 포함한 재정기조는 2020년 GDP 대비 4.5% 확장, 2021년 1% 긴축
  - 임시 비상 조치를 제외한 재정 기조는 2020년 GDP 대비 1.1%, 2021년 1.4%로 2021년에도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확장 기조로 전망
- (정부채무)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19년 이전 5년간 감소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86%에서 2021년 약 15%p 상승한 약 102%로 전망([그림 2] 참조)

●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 유로지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규모의 재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으며, 그 규모는 2020년 GDP 대비 4.2%, 2021년 2.4%에 해당

●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에 대응한 EU 차원의 경제정책은 신속하고 포괄적이며 대규모로 시행되었으며, 재정 유연성 및 근로자와 기업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

[그림 2] 2020~2022년 EU 회원국 일반정부 채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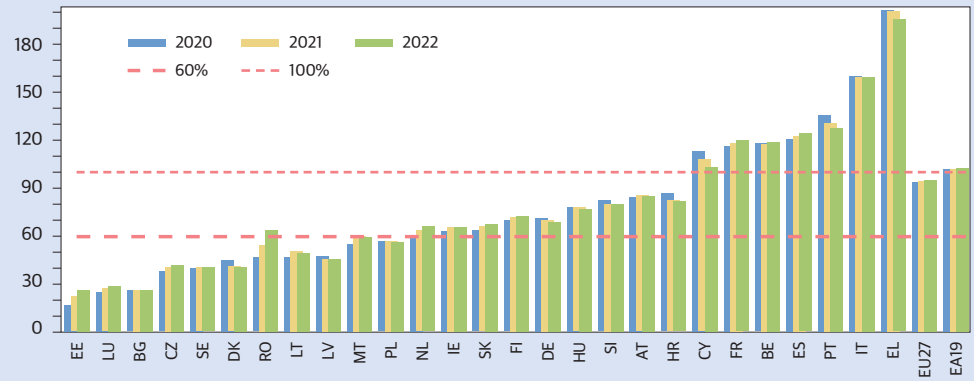

주: EE-에스토니아, LU-룩셈부르크, BG-불가리아, CZ-체코, SE-스웨덴, DK-덴마크, RO-루마니아, LT-리투아니아, LV-라트비아, MT-몰타, PL-폴란드, NL-네덜란드, IE-아일랜드, SK-슬로바키아, FI-핀란드, DE-독일, HU-헝가리, SI-슬로베니아, AT-오스트리아, HR-크로아티아, CY-키프로스, FR-프랑스, BE-벨기에, ES-스페인, PT-포르투갈, IT-이탈리아, EL-그리스, EU27-EU27개국, EA19-유로지역 19개국

출처: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0*, 2021, Graph I.1.9

- (재정운용 유연성 확대) 즉각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 EU 재정 프레임워크 시행에 긴급 조치를 적용하였으며, 재정운용 유연성 부여, 국가지원(state aid) 기준 적용에 유연성 제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곳에 EU 구조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
- (근로자·기업 지원) 직장에서 일자리와 근로자 소득 보호, 기업 지원, 보건 관련 지출 금융 완화 및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통화 완화와 같이 세 가지의 새로운 긴급 조치를 시행
- (SURE 프로그램) EU는 SURE[7]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전장치(backstops) 중 하나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고용 및 소득을 보호하고, 18개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 900억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 (Next Generation EU[8])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집행위가 제안했으며, 투자 및 개혁에 보조금 및 융자 형태로 재정지원을 하는 회복·복구 수단(6,725억유로)이 주요 수단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7)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회원국의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한 EU 차원의 임시 조치. 회원국의 단기 고용정책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경제충격이 회원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에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함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pp. 40~43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266

IMF

■ IMF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연설(2021. 2. 26.)[9]

- 백신 개발과 강력한 통화·재정 조치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회복 경로에 있으나 위험한 수준으로 국가 간, 국가 내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2022년까지 1인당 누적 소득 손실[10]이 선진국에서는 13%로 전망되나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에서는 22%에 달할 전망
  - 국가 내에서는 청년, 저숙련 노동자, 여성들이 일자리 손실로 인해 불균등한 영향을 받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의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
  -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회복 지원 조치이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백신을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이 필요
  - 보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국가별 상황에 맞는 기업 및 가계 긴급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이 점진적으로 종료될 때의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
  -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취약성 증가는 글로벌 회복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맞춰 IMF는 양허성 대출을 확대하고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신규 배분 등을 논의하고 있음

■ IMF, 특별인출권* 바스켓 평가 연기(2021. 3. 15.)[11]

* IMF의 준비자산이자 IMF 등 국제기구의 회계 단위로,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스털링 통화로 구성됨. 국가별 배분액 대비 초과/미달 보유분에 이자/수수료를 부과.

- 이사회가 현 특별인출권 바스켓을 2021년 9월 30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0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 현 특별인출권 바스켓은 2015년 11월 결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5년마다 바스켓의 구성과 가치를 검토하나 실무진 제안에 따라 연장을 결정

■ IMF, 특별인출권 신규 배분 비공식 논의(2021. 3. 23.)[12]

- 이사회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글로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 신규 배분을 비공식 논의

9) IMF,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 Calls for Strong G20 Policies to Counter 'Dangerous Divergence', 2021. 2. 2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2/26/pr2147-g20-imf-md-kristalina-georgieva-calls-strong-g20-policies-counter-dangerous-divergence Kristalina Georgieva, "The Great Divergence: A Fork in the Road for the Global Economy," IMF blog, 2021. 2. 24. https://blogs.imf.org/2021/02/24/the-great-divergence-a-fork-in-the-road-for-the-global-economy/

10) 세계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2019년 1인당 소득 대비 2020~2022년 누적 소득 손실

11)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Extension of Current SDR Valuation Basket Until July 31, 2022, 2021. 3. 1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3/15/pr2168-imf-executive-board-approves-extension-of-current-sdr-valuation-basket-until-july-31-2022

12) IMF, IMF Executive Directors Discuss a New SDR Allocation of US$650 billion to Boost Reserves, Help Global Recovery from COVID-19, 2021. 3. 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3/23/pr2177-imf-execdir-discuss-new-sdr-allocation-us-650b-boost-reserves-help-global-recovery-covid19

● 총재는 올해 6월까지 제안서를 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이사회와 총회가 이를 의결하면 국가별 쿼터에 따라 특별인출권이 배분될 예정

■ IMF,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1. 3. 25.)[13]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감시활동

● 한국은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조치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옴

● 이사회는 한국의 효과적인 확산 방지 조치와 포괄적인 경제정책,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를 높이 평가하고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

- 정부의 추경안 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이전 지출을 늘리고 백신 구입을 함으로써 올해 재정충격지수가 양(+)[14]일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재정 확대는 당국이 제안한 준칙 기반 재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될 수 있으며, 재정준칙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독립위원회를 지정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디지털, 친환경, 포용적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려는 당국의 전략을 격려
- 잠재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여성과 청년에 대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선임연구원>

OECD

■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2021. 3. 9.)[15), 16)]

● (현황) 최근 세계 경제는 일부 국가들의 추가적 경기부양 발표,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힘입어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2020년 4분기 중 신종 바이러스 확산, 강한 봉쇄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13) IMF, Republic of Korea: 2021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Staff Statemen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2021. 3. 25.,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1/03/24/Republic-of-Korea-2021-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Staff-Statement-50306

14) 양(+)이면 확장 재정으로 해석. 협의단 보고서의 0.3%에서 0.3%로 상향 조정됨

15) 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34bfd999-en.pdf?expires=1616054603&id=id&accname=ocid72023593&checksum=37927692913203A74A7D8188BC170278 "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OECD, 2020.

16)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는 연 2회 OECD Economic Outlook(통상 5월, 11월 발표)의 중간 시점(3월, 9월)에 발표하는 G20 국가 중심의 경제전망보고서임

- 전 세계 GDP가 팬데믹 이전 대비 1% 하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국가별 또는 부문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금융 상황이 개선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
  - (주요 유럽국가) 신종바이러스 확산, 서비스업을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남
  - (호주·일본·한국) 효과적인 봉쇄 조치, 정부 재정지원, 제조업의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 (중국·인도·터키)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준재정조치, 제조업과 건설업의 회복 등으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직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세계무역은 세계 산업생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IT 장비나 의료용품 등의 수요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기업투자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소비와 고용 부문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가계소비) 2020년 여름 이후 바이러스 재확산, 봉쇄 조치 재개 등으로 소매판매나 여가활동 지출이 타격을 받았으며 부진한 소비심리는 가계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음
  - (고용) 근로시간 단축, 임금지원 등 일자리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경우 최근 발표한 추가 재량적 재정지원 정책이 2021년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1년간 GDP 성장률(3~4%) 제고, 고용 증가(225~300만명),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성장 제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신흥국) 중국 등 일부 신흥국가는 2021년 중 재정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보임

● (경제전망) OECD는 2020년 하반기 경기회복 추세, 백신효과,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및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5.6%, 4.0%(2020년 12월 전망 대비 1.4%p, 0.3%p 상향 조정)로 전망함(<표 1> 참조)

- 각 국가들의 분기별 GDP는 2021년 중반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별화된 경기회복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유럽국가) 2021년까지 지속된 봉쇄 조치와 주요국 대비 제한적인 재정정책(유로지역의 재량지출은 GDP의 1%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효과적인 방역 조치, 중국의 경기반등, 일본 및 인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남미 및 아프리카) 바이러스 재확산, 백신 확보 지연, 재정정책 여력 부족 등으로 경기 회복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표 1> 실질 GDP 성장률 전망(2021년 3월 OECD 중간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중간경제 전망	2020년 11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020년 11월 전망치 대비 차이
세계	−3.4	5.6	1.4	4.0	0.3
G20[1]	−3.2	6.2	1.5	4.1	0.4
호주	−2.5	4.5	1.3	3.1	0.0
캐나다	−5.4	4.7	1.2	4.0	2.0
유로지역	−6.8	3.9	0.3	3.8	0.5
독일	−5.3	3.0	0.2	3.7	0.4
프랑스	−8.2	5.9	−0.1	3.8	0.5
이탈리아	−8.9	4.1	−0.2	4.0	0.8
스페인[2]	−11.0	5.7	0.7	4.8	0.8
일본	−4.8	2.7	0.4	1.8	0.3
한국	−1.0	3.3	0.5	3.1	−0.3
멕시코	−8.5	4.5	0.9	3.0	−0.4
터키	1.8	5.9	3.0	3.0	−0.2
영국	−9.9	5.1	0.9	4.7	0.6
미국	−3.5	6.5	3.3	4.0	0.5
아르헨티나	−10.5	4.6	0.9	2.1	−2.5
브라질	−4.4	3.7	1.1	2.7	0.5
중국	2.3	7.8	−0.2	4.9	0.0
인도[3]	−7.4	12.6	4.7	5.4	0.6
인도네시아	−2.1	4.9	0.9	5.4	0.3
러시아	−3.6	2.7	−0.1	2.6	0.4
사우디아라비아	−4.0	2.6	−0.6	3.9	0.3
남아프리카	−7.2	3.0	−0.1	2.0	−0.5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나 G20 집계 시 자체적으로 회원인 국가만을 포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청국임
3)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 2021. 3. 9., p. 4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간경제전망 결과는 2022년 4분기 전 세계 GDP는 코로나19 직전 (2019년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그림 3], [그림 4] 참조)
- OECD는 향후 백신보급 및 접종속도, 코로나

[그림 3]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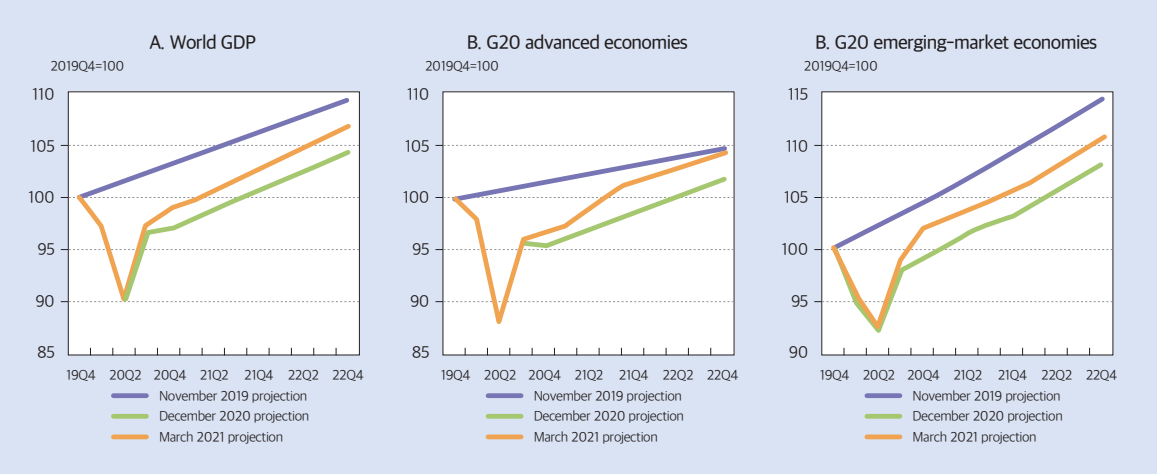

주: 2019년 11월 OECD 경제성장전망은 2021년 각국의 잠재성장률을 반영한 2019년 11월 전망치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 전망하였음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 2021. 3. 9., Figure 9

[그림 4] 국가별 코로나19의 영향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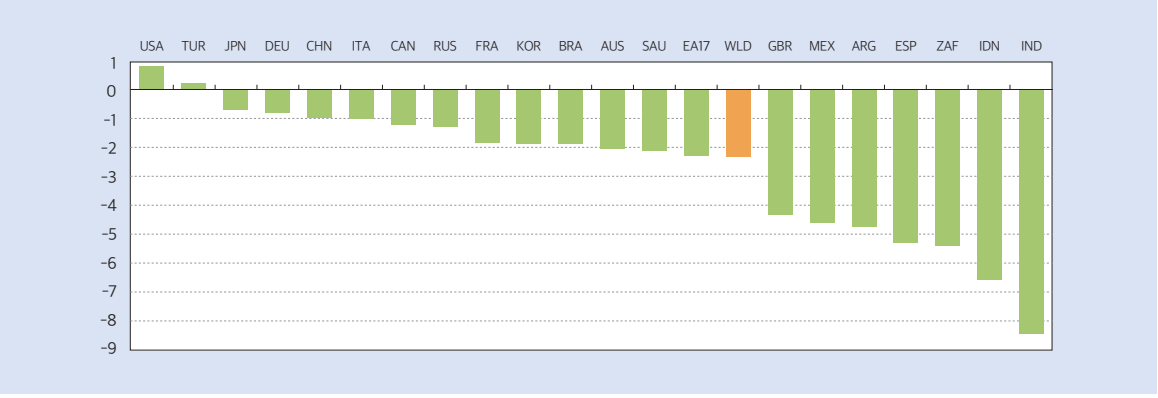

주: 1. 2022년 4분기 GDP 산출 값의 격차(2019년 11월 전망치 대비 2021년 3월 전망치의 차이)
2. 2019년 11월 OECD 경제성장 전망은 2021년 각국의 잠재성장률을 반영한 2019년 11월 전망치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 전망하였음
3. USA-미국, TUR-터키, JPN-일본, DEU-독일, CHN-중국, ITA-이탈리아, CAN-캐나다, RUS-러시아, FRA-프랑스, KOR-한국, BRA-브라질, AUS-호주, SAU-사우디아라비아, EA17-EU17개국, WLD-세계, GBR-영국, MEX-멕시코, ARG-아르헨티나, ESP-스페인, ZAF-남아프리카, IND-인도네시아, IND-인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 2021. 3. 9., Figure 10

19 전개 양상에 따른 상·하방 리스크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

- (긍정적 시나리오)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1년 7%, 2022년 5%로 전망(기본 전망 대비 각각 1.5%p, 1.0%p 높은 수준)[17]
- (부정적 시나리오)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1년 4.5%, 2022년 2.75%로 전망(기본 전망 대비 각각 1.0%p, 1.25%p 낮은 수준)[18]

- 주요 고려사항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시장 취약성 지속 등에 대해 언급함
  - (인플레이션 상승) 통화가치 하락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진국에서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일부 신흥국들의 물가도 높은 수준임
  - (금융시장 취약성) 코로나19 이후 적극적 통화정책 등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은 양호하지만 주식 및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세, 높은 부채비율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

● (정책권고) 경기회복, 바이러스 확산 억제, 팬데믹에 따른 장기비용 축소를 위해 전 세계 백신보급 가속화, 적극적인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백신 생산 및 보급 가속화가 시급함
  - 전 세계 백신공급을 위해 국가 간 협력,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시스템(검사·추적·격리)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함
  - 각 국가들은 경기회복 속도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자산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고려해야 함
  -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조 변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통화정책인 '평균물가안정 목표제(average inflation-targeting framework)'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소득 및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최근 결정된 추가적 경기부양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재정지원방식은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보편적 지원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부문 및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 코로나19는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부문 간 불평등 확대, 산업구조 재편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7) 백신보급 가속화로 각국의 봉쇄 조치가 조기에 완화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2021년 2분기부터 가계 저축률이 1.5%p 하락할 것으로 가정
18) 백신보급 지연 및 변종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소비가 위축되어 가계 저축률이 1%p 상승하고 기업 자본스톡이 0.5% 감소할 것으로 가정

■ OECD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 일자리 및 기업 지원 관련 보고서(Supporting jobs and companies: A bridge to the recovery phase) 발표(2021. 3. 10.)[19]

● 전 세계 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수백만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ed),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s)하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조업 재개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

● 팬데믹 이후 큰 타격을 받은 부문과 근로자 지원, 사업성과가 높으나 부채가 과도한 기업의 파산 방지 지원, 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고 구직자와 고용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 일부 OECD 국가들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등 관련 정책지원을 실행하였음

- (프랑스, 이탈리아) 청년들을 위한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
-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기업이 견습과 기업 내 훈련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임금보조금을 도입
- (독일, 스코틀랜드)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견습생을 추가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 제도를 도입
- (캐나다) 30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보조금을 제공하고 '하계 일자리 프로그램(Summer Jobs Programme)'[20]을 확대함
- (한국) 청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공공디지털청년일자리계획'[21]을 마련
- (일본)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긴급 혜택을 제공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책(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R. 1319) 최종 통과(2021. 3. 10.)[22]

● (개요)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2월 19일 H.R. 1319 초안이 발표[23]된 후 하원에서 동 법안이 정식 발

19) OECD,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supporting-jobs-and-companies-a-bridge-to-the-recovery-phase-08962553/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Supporting jobs and companies: A bridge to the recovery phase," OECD, 2020.
20) 캐나다 정부는 FY2021-22년 하계 일자리 프로그램에 4억 4,75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12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임
2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공공부문의 비대면 및 디지털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공디지털청년일자리계획'을 발표함. 5개의 공공기관을 통해 2,050명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임
22)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3/15/remarks-by-president-biden-on-the-implementation-of-the-american-rescue-plan/
23)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news/press-releases/new-report-bill-text-budget-committee-continues-pave-way-american-rescue-plan

의(2월 24일)되었으며, 이후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 3월 10일 최종 확정

- (주요 내용[24), 25)]) 총규모는 약 1.8조~1.9조달러[26)] 규모(GDP 대비 약 8.3%[27)]로 추정되며, 주요 가계 지원정책으로는 재난지원금과 긴급 임차인 지원, 실업급여가 있으며, 고용 유지 및 급여 보호 등을 위한 기업 정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주요 가계 및 개인 지원으로는 재난지원금 1인당 1,400달러 지급, 실업급여는 주당 300달러 지급, 긴급임대료 지원은 2027년 9월 말까지 약 215억달러 소요 전망
  - 주요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유급 병가 및 가정휴가 등에 대한 기업의 급여세액공제와 함께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등이 있음
    - 항공업계*의 경우, 고용 및 하급 계약자(contractor)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됨

      * 동 정책은 음식 공급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항공 관련 일자리/항공업계 근로자 등의 임금/급여/수당 등을 유지하기 위해 약 150억달러 소요 전망
  - 중소기업 지원책의 경우, 3차 지원책(CARES Act)에서 규정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및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사업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미 의회,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28)] 연장법안(PPP[29)] Extension Act(H.R. 1799) 통과 의결(2021. 3. 25.)

* 동 법안은 3월 21일에 하원(중소기업 상임위원회[30)])에서 발의되었으며, 하원 표결(415:3)을 거쳐 상원으로 이송(3월 17일)후 통과 완료(3월 25일)

- 동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법된 CARES Act(P.L. 116~136)의 PPP 조항을 수정(만료시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PPP의 만료시한은 2021년 3월 31일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PPP 만료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기타]

■ 미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보고서 발표(2021. 2. 19.)[31)]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법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과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담은 통화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2회 의회에 제출

-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한 위축을 겪었지만, 백신접종과 경제활동 회복으로 2020년 연말부터 반등세를 보임

24)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help-way-budget-reconciliation-moves-american-rescue-plan-forward
25) 세부 정책규모는 상원 최종 통과 의결 전에 작성된 추정치 기준으로 작성
26) 총규모는 CBO에서 3월 10일 발표한 동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함(https://www.cbo.gov/system/files/2021-03/Estimated_Budgetary_Effects_of_HR_1319_as_passed_0.pdf)
27) GDP 규모는 CBO에서 2월에 발표한 'CBO Historical Data and Economic Projections'의 2021년 경제전망 수치(명목)를 기준으로 작성
28)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중소기업 등이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여 등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며, 특정 기간 동안 지출한 특정 급여에 대해 전액 감면이 가능함(임대료, 공과금 지출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
29)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30) Hous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31) Fed, *Monetary Policy Report February 2021*, 2021. 2. 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2021-02-mpr-summary.htm

<표 2> 통화정책보고서 경제전망(2019년 12월, 중윗값)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기
경제성장률	-2.4	4.2	3.2	2.4	1.8
(9월 전망)	-3.7	4.0	3.0	2.5	1.9
실업률	6.7	5.0	4.2	3.7	4.1
(9월 전망)	7.6	5.5	4.6	4.0	4.1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1.2	1.8	1.9	2.0	2.0
(9월 전망)	1.2	1.7	1.8	2.0	2.0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1.4	1.8	1.9	2.0	-
(9월 전망)	1.5	1.7	1.8	2.0	-
기준금리(FFR)	0.1	0.1	0.1	0.1	2.5
(9월 전망)	0.1	0.1	0.1	0.1	2.5

주: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전년 4분기 대비 각해 4분기 퍼센트 변화, 실업률은 각해 4분기 평균,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
출처: Fed, *Monetary Policy Report - February 2021*, 2021. 2. 19., Table. 1

- 2020년 상반기 GDP는 누적 10% 하락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재정 및 통화 정책적 지원을 통해 3분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4분기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함
- 실업률은 4월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인 14.8%로 급증하며 2,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후,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으나, 11월부터 레저 및 접객업 부문과 같은 일부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회복세가 현저히 둔화됨

● (전망)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중윗값[32])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4%로 경제 위축을 보이지만, 장기[33]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이전 몇 년간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임

- 실업률 전망치는 모든 연도에서 기존 9월 전망보다 하락했으며 장기 예측치도 4.1%로 전년 수준과 동일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0년 주 및 지역별 실업 통계 발표(2021. 3. 3.)[34]

● 2020년 미국 모든 지역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인구 비율[35] 감소를 보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전체의 실업률은 8.1%로 전년보다 4.4%p 증가한 반면, 고용-인

32) 통화 정책보고서의 전망치 중윗값은 FOMC 회의 참가자들 각각의 경제 전망치 중 중윗값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함
33) 장기 전망은 적절한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없을 때 각 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
34)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Regional and State Unmployment*, 2021. 3. 3., https://www.bls.gov/news.release/srgune.toc.htm
35) 16세 이상의 집단가구(형무소, 정신 병원 등)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인구 수 대비 고용자 수의 비율

구 비율은 56.8%로 4.0%p 하락

- 51개 주 전체에서 전년 대비 실업률이 증가했고, 고용-인구 비율이 감소함
  - 실업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는 하와이(9.1%p)와 네바다(8.9%p)이고, 총 9개 주에서 5.0%p 이상 실업률이 증가함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1. 3. 3.)[36]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지난 1월부터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대되었음
  -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대되었고 향후 6~12개월 간 낙관적 기대를 보임
  - 다만, 소비지출과 자동차 판매는 일부 지역에서 약세를 보였고, 레저 및 접대 부문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
- (고용 및 임금)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보임
- (물가) 지난 베이지북 발표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했고, 향후 몇 개월 간 가격 인상이 예상됨
  - 철강 및 목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제조비용이 증가함
  - 연료비용 상승과 수용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운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 의회예산처(CBO), 2021 장기재정전망(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21. 3. 4.)[37]

* 동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은 올해(2021년 2월) CBO에서 발표한 2021~2031 기준선 전망과 2021년 1월 12일까지 입법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분석함

- (재정수지) FY2021 재정적자 추정규모는 GDP 대비 10.3%로 1945년 이래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10년 뒤인 2031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7%, 전망기간의 마지막 회계연도인 2051년에는 GDP 대비 13.3%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는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약해(wane)지면서 감소하겠으나, 이후 2031~2051년 기간 동안 순이자지출(net interest)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증가세를 보일 전망([그림 5] 참조)
- (국가채무) FY2021 연방 채무[38]는 GDP 대비 102% 전망
  - 연방 채무는 2031년에 GDP 대비 107%를 기록하면서 미 역사상 최고 기록(106%)을 경신할 전망 → 2051년 GDP 대비 채무규모는 202% 전망([그림 6] 참조)

36) Fed, *Beige Book – March 3, 2021*, 2021. 3. 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03.htm
37)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977
38) debt held by the public(정부내부거래 제외)

[그림 5] 총 수입·지출 및 주요 지출 항목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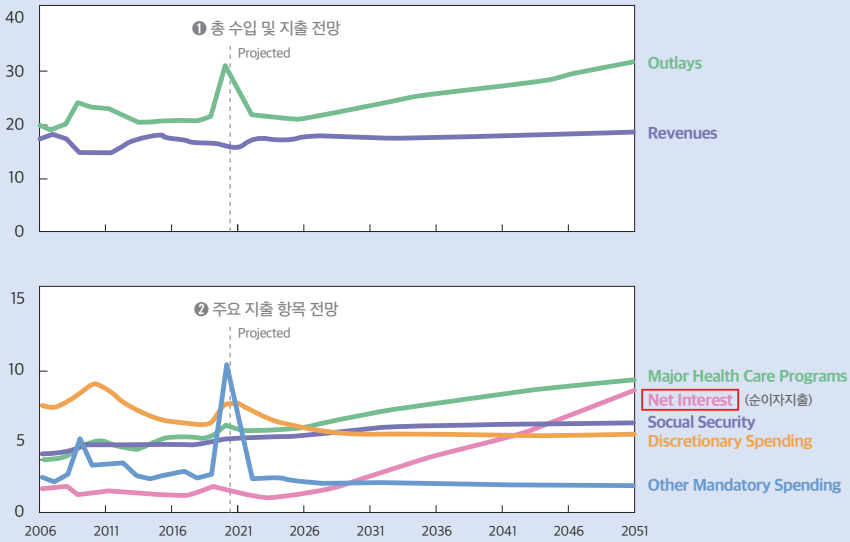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4.

[그림 6] 연방 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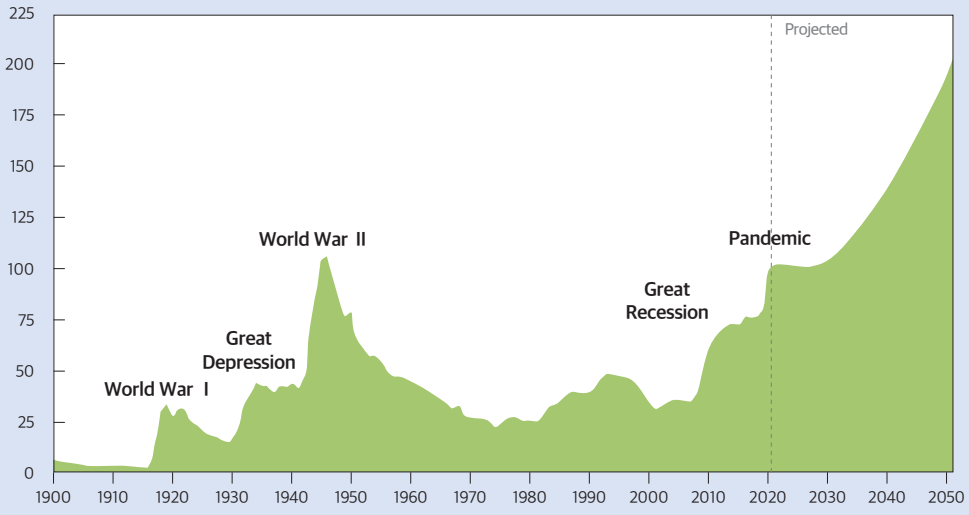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4.

<표 3> 장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추정	연평균 전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2031년	2032~2041년	2042~2051년
수입						
개인 소득세	8.1	7.7	7.7	9.1	9.6	10.1
사회보험급여세(payroll tax)	5.9	6.2	6.0	5.9	5.8	5.7
법인세	1.1	1.0	0.7	1.3	1.2	1.2
기타	1.3	1.4	1.4	1.3	1.1	1.3
총수입	16.3	16.3	16.0	17.5	17.7	18.2
지출						
의무지출	12.9	21.8	17.3	14.2	16.1	17.2
사회보장	n/a	n/a	5.2	5.6	6.1	6.3
주요 의료보험	n/a	n/a	5.8	6.3	7.8	9.0
기타	n/a	n/a	6.3	2.3	2.1	2.0
재량지출	6.3	7.8	7.6	6.1	5.5	5.5
이자	1.8	1.6	1.4	1.6	4.0	7.0
총지출	21.0	31.2	26.3	21.9	25.6	29.7
재정적자	4.6	14.9	10.3	4.4	7.9	11.5
연방채무 (debt held by the public)	79.2	100.1	102	107	145	202

출처: CBO, *The 2020 Long-Term Budget Outlook*, 2020. 9. 21.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11.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4.

- (지출 전망[39]) FY2021 GDP 대비 총재정지출은 전년(31.2%) 대비 4.9%p 감소한 26.3% 전망

  * GDP 대비 총지출 전망규모: (2031년) 23.2% → (2051년) 31.8%

  • 단기에는 대유행과 관련된 지출이 감소하나, 대부분의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지출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 지출은 인구의 고령화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메디케어 및 기타 보건 지출은 1인당 보건비용 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함

- (수입 전망) FY2021 GDP 대비 재정수입은 전년(16.3%) 대비 0.3%p 감소한 16.0% 전망 (<표 3> 참조)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의 영향이 약해(dissipate)지면 GDP 대비 수입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39)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4., Figure 7.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2021년 국민부담률 발표(2021. 2. 26.)[40]

● 재무성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 추계를 발표함

- 2021년 국민부담률은 44.3%로 전망되었으며, 재정적자를 고려한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56.5%로 전망됨

* 국민부담률: 2019년(실적) 44.4%, 2020년(실적 전망) 46.1%
* 잠재적 국민부담률: 2019년(실적) 49.7%, 2020년(실적 전망) 66.5%

■ 재무성, FY2020 3분기 국고상황 발표(2021. 3. 5.)[41), 42)]

● 재무성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부의 예금 증감 및 그 원인이 되는 재정자금 대 민간수지 및 국고 대 일본은행 수지 상황에 대한 집계를 발표함

- (정부예금) 재정자금 대 민간수지에서 정부예금의 증감에 관계없는 조정항목(4,858억엔의 지불 초과)을 제외한 수지는 45조 5,610억엔의 수취 초과이며, 국고 대 일본은행 수지는 43조 5,247억엔의 지불 초과로, 그 결과 정부예금의 3분기 말 잔액은 전기 말에 비해 2조 363억엔 증가한 49조 1,977억엔을 기록함

[기타]

■ 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 대책 관계 장관 회의 개최(2021. 3. 16.)[43), 44)]

● (배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 및 자살·고독·고립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고가 심각해졌다고 판단, 약 5천억엔의 예비비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책(안)을 결정

● (주요 내용)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육아세대 지원 및 자살 방지 상담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지원 등 그간 충분한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에 대한 대책

- (생활 곤란자 지원) 긴급사태선언 재연장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사람들을 위해 긴급소액자금 등의 특례대출 및 주거확보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 (저소득육아세대에 대한 육아세대생활지원특별교부금[가칭]) 기존 아동부양수당수급자 등 저소득 한부모 가구와 저소득 육아세대[45]에 대해 자녀 한명당 5만엔 지급(국가부담 10/10)
- (한부모 가정 맞춤지원)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자립지원 및 주거확보로 이어질

40) 재무성, https://www.mof.go.jp/budget/topics/futanritsu/20210226.html
41) 재무성, https://www.mof.go.jp/exchequer/reference/exchequer_report/fy2020_3rd_quarter/r023gai.htm
42) 재무성, https://www.mof.go.jp/exchequer/reference/exchequer_report/fy2020_3rd_quarter/index.html
43)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103/16kaigi.html
44) 내각부, http://www.cas.go.jp/jp/seisaku/corona_hiseiki/dai1/gijisidai.html
45) 구체적인 소득 기준 등은 추후 제도 설계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에 의거하여 지급할 예정

수 있는 자립촉진 패키지(가칭) 시행

- (고독·고립 대책을 위한 NPO 지원)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대응을 위해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 관광청, 지역관광사업지원 실시(2021. 3. 26.)[46), 47)]

- 국토교통성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지사회의 긴급 제언 등을 근거로 스테이지Ⅱ 이하인 도도부현에 현내 여행 할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관광 사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
- GoTo 트래블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스테이지Ⅱ 이하인 지역의 동일 현내 여행에 대해 국가에서 해당 도도부현에 보조금을 교부
  - (지원내용) 거주지와 동일 현내 여행 할인 지원으로 제도 설계는 모두 도도부현에서 결정
  - (지원금액) 국가는 1인 1박당 5천엔, 상품대금 50%를 상한으로 지원(당일 여행의 경우는 1인당 5천엔, 상품대금의 50% 상한)
  - (실시기간) 4월 1일 이후 준비가 갖추어진 도도부현부터 순차 개시해, 5월 31일 숙박(6월 1일 체크아웃) 분까지
  - (예산규모) 약 3천억엔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내각, 2022년 예산안 및 FY2021-2025 중기재정계획안[48)]에 대한 기본수치(Eckwerte), 2021 추경예산안 결의(2021. 3. 24.)[49)]

- (배경) 독일은 코로나19 위기에 경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 경제성장률은 -4.9%, GDP 대비 국가채무는 약 70%를 기록
  - 2021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 몇 년간 견고한 재정 상황을 유지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
- (2021 추경안 내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기업,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04억유로의 신규차입이 필요
  - 주요 내용으로 기업 지원 255억유로, 백신조달 62억유로, 조세감면, 경제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포함
  - 추가 부채조달로 인해 2021 예산목표상 신규차입 규모는 2,402억유로로 증가

46) 관광청, https://www.mlit.go.jp/kankocho/news06_000503.html
47)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2103/26_a.html
48) 채무제한법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본 수치(세출, 세입, 차입액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방식
49) 연방 재무부, Presse-Pressemitteilungen, 2021. 3.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3/2021-03-24-bundeshaushalt-2022.html, 검색일자: 2021.3.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Bundeshaushalt/2021-03-24-eckwertebeschluss-bundeshaushalt-2022-und-finanzplan.pdf?__blob=publicationFile&v=3

<표 4> FY2022 예산 및 FY2021-2025 중기재정계획 기본 수치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년 목표	2022년 기본 수치	중기재정계획안 기본 수치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지출	5,477	4,198	3,975	4,027	4,034
전년 대비 증감률	+24.0	-23.4	-5.3	+1.3	+0.2
투자	619	500	500	500	500
재정수입	5,477	4,198	3,975	4,027	4,034
조세수입	2,840	3,082	3,228	3,350	3,474
신규차입	2,402	815	83	115	100

출처: 연방 재무부, Eckwerte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zum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22 und zum Finanzplan 2021 bis 2025, 2021. 3. 24.

● (2022 예산안 기본 수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광범위한 투자이니셔티브 지속, 사회적 결속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2022 예산안 기본 수치는 전년 대비 1,279억유로(23.4%) 감소한 4,198억유로

- (투자강화) 2022년 연방예산에 500억유로의 신규 투자지출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00억유로 이상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사회적 결속 강화) 독일 시민과 기업을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기여금[50]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
- (국제협력 강화 등) 인도적 지원, ODA에 대한 지출 확대, 국방예산 확대, 국제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WHO에 1억 6,200만유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지원에 15억유로 추가 지원 등
- 2022년 세수 부족 및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815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022년에도 채무제한법(Schuldenregel) 규정의 면제가 필수적임

● (중기 전망)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 규정의 재적용으로 신규차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

- 신규차입 규모는 2023년 83억유로, 2024년 115억유로, 2025년 100억유로 계획

[기타]

■ 경제에너지부,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Überbrückungshilfe III) 확대 및 고난지원금

50) 독일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연금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고용 소득에 부과

(Härtefallfhilfen) 발표 (2021. 3. 3.; 2021. 3. 19.)[51), 52)]

- (Überbrückungshilfe III) 독일은 기존의 연매출 7.5억유로 이하 기업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락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됨
- (Härtefallfhilfen) 연방 및 주정부는 기존 기업 프로그램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 독일 재무부, 독일재건은행 특별 프로그램 연장(KfW-Sonderprogramm) 발표(2021. 3. 25.)[53)]

- (배경) 독일은 2020년 3월 23일 채택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에서 독일재건은행을 통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낮은 이율 및 간소화한 절차를 통한 대출을 진행함
  - 1년 동안 기업 지원자금으로 총 490억유로가 조달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 (프로그램 연장 및 확대) 연방정부는 KfW 특별 프로그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존 2021년 6월 30일)하고 2021년 4월 1일부터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 KfW 신속 대출 한도 확대: 고용인 50인 이상 기업 180만유로(기존 80만유로), 10~50인 기업 112만 5천유로(기존 50만유로), 10인 이하 기업 67만 5천유로(기존 30만유로)
  - KfW 기업대출(KfW-Unternehmerkredit) 및 신생 기업을 위한 대출(ERP-Gründerkredit)의 대출 한도 역시 기존의 80만유로에서 180만유로로 확대

■ 독일 재무부, 미래펀드(Zukunftsfonds) 시행 발표(2021. 3. 24.)[54)]

- 연방 정부는 미래기술을 위한 투자펀드(미래펀드)에 추가 100억유로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펀드는 독일재건은행 벤처캐피탈(KfW Capital)을 통해 관리될 예정
  - ERP[55)] 특별 기금과 미래 펀드의 지원으로 향후 10년간 벤처캐피탈펀드, 성장펀드, 벤처부채펀드 규모는 25억유로 규모로 증가할 것이며, KfW Capital은 스타트업을 위한 성장재원 조

51)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03/20210303-ueberbrueckungshilfe-3-jetzt-auch-fuer-grosse-unternehmen-750-mio-umsatzgrenze-entfaellt-fuer-vom-lockdown-betroffene-branchen.html, 검색일자: 2021. 3. 4.

52)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3/2021-03-19-bund-und-laender-bringen-haertefallhilfen-auf-den-weg.html
독일 경제에너지부, https://www.bmwi.de/Redaktion/DE/Coronavirus/Fragmente/kleine-mittlere-grosse-unternehmen-haertefallhilfen.html, 검색일자: 2021. 3. 24.

53) 독일 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1. 3. 2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3/2021-03-25-kfw-sonderprogramm-bis-jahresende-verlaengert.html, 검색일자: 2021. 3. 26.

5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3/2021-03-24-bundesregierung-staerkt-start-up-finanzierung.html

55) European Recovery Programme

달을 포함하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

- 또한 기존 ERP/EIF 성장펀드(growth facility)를 기반으로 최대 35억유로 규모의 성장펀드가 만들어질 것이며, 최근 10억유로까지 성장하고 있는 Deep Tech Future Fund를 통한 직접 투자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시장에 대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선임연구원>

프랑스

[기타]

■ 재정의 미래에 관한 위원회(la commission sur l'avenir des finances publiques) 보고서 발표 (2021. 3. 18.)[56]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 국가 재정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하에 재정의 미래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음[57]

- 코로나19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경제 및 사회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채무는 GDP 대비 120%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
- 프랑스의 공공채무 수준이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이자율이 수년 동안 낮게 유지되고 있어, 이자부담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다만 공공채무 역할에 다음의 위험 요인들이 존재함
  - 미국의 경기부양책 이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유로존 국가 간 공공채무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이에 따라 회원국 간 긴장과 금리 상승의 위험이 존재함
  - 생태학적 전환을 포함해 미래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
- 공공지출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 공공채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안정화 방안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위기가 지속하는 한 재정지원과 복구계획은 계속 이어져야 함
  -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GDP의 지속적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공공채무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만 지원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가장 영향을 받는 부문에 재정지원을 집중해야 함
-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 조정보다는 세출 관리가 중요함
  - 프랑스의 세금 부담 수준은 이미 높기 때문에

56) 프랑스 정부, Rapport de la commission sur l'avenir des finances publiques, 2021. 3. 18.,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2186-rapport-de-la-commission-sur-l-avenir-des-finances-publiques

57) 프랑스 정부, Installation de la commission sur l'avenir des finances publiques, 2020. 12. 4.,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933-installation-de-la-commission-sur-l-avenir-des-finances-publiques

세금 인상을 고려하긴 어렵고, 세금의 감소가 필요한 경우엔 다른 세금을 인상하는 등으로 상쇄해야 함

- 급속한 채무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재정지출을 재정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채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재정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함

- 다년도 지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재정운용에 활용해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감시기구가 필요
- 의회의 예산 논의과정 강화

■ 3차 이동제한 조치 선언(2021. 3. 18.)[58]에 따른 기업 지원 조치 발표(2021. 3. 22.)[59]

●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파리를 포함해 총 16개 데파르트망(departement)[60]에 대해 3월 20일부터 최소 한 달간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함

● 행정 조치로 인해 폐쇄되는 기업은 매월 최대 1만유로 또는 손실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 행정 조치로 폐쇄된 기업 중 온라인 판매 등 원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5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영국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21 예산안(Budget 2021) 발표(2021. 3. 3.)[61]

* 영국 재무부는 당초 2020년 가을로 예정했던 예산안 발표 일정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하고 2021년 3월에 Budget 2021을 발표함

● 경제전망(<표 5> 참조)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영국의 GDP는 4%의 성장이 예상되며 백신 공급과 공공보건 제한 조치 완화로

58) 프랑스 정부, Conférence de presse du Premier ministre sur les mesures contre la Covid-19, 2021. 3. 18.,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2188-conference-de-presse-du-premier-ministre-sur-les-mesures-contre-la-covid-19

59) 프랑스 재무부, Annonces du Premier ministre : précisions sur les fermetures des commerces, 2021. 3. 22., https://www.economie.gouv.fr/annonces-premier-ministre-precisions-fermetures-commerces#

60) 데파르트망은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함. 이동제한 조치 대상지역은 Aisne, Alpes-Maritimes, Essonne, Eure, Hauts-de-Seine, Nord, Oise, Paris, Pas-de-Calais, Seine-et-Marne, Seine-Saint-Denis, Seine-Maritime, Somme, Val-de-Marne, Val-d'Oise et Yveline.

61) HM Treasury, Budget 2021, 2021. 3. 3.,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budget-2021
HM Treasury, Budget 2021: What you need to know, 2021. 3.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dget-2021-what-you-need-to-know
HM Treasury, Budget 2021 sets path for recovery, 2021. 3.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dget-2021-sets-path-for-recovery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3. 3.,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1/

<표 5>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p)

구분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 성장률	1.4	-9.9	4.0	7.3	1.7	1.6	1.7
2020년 11월 전망 대비 변화(%p)	0.2	1.4	-1.5	0.7	-0.6	-0.1	0.0
소비자물가(CPI)상승률	1.8	0.9	1.5	1.8	1.9	1.9	2.0
실업률(LFS)	3.8	4.5	5.6	5.9	5.1	4.5	4.4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3, Table 1.1, 2. 11. 일부 발췌

2020년 11월 전망의 예상 시점보다 6개월 이른 2022년 2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 2021년 실업률은 전년(4.5%)보다 상승한 5.6%로 전망되며, 특히 2021년 말 6.5%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유지보조금제도 연장 등으로 인해 이는 2020년 11월 전망에서 예상한 최고 실업률 수준(7.5%)보다는 낮은 수준임
- (물가) 2021년과 2022년 CPI 인플레이션은 실업률 증가로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어 통화정책위원회(MPC)의 목표치(2%)를 다소 하회할 전망임
- (주요 리스크) 팬데믹과 경제의 향후 추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효과가 높은 백신의 빠른 공급, 신규 치료법 개발, 누적 가계저축의 감소 속도 증가 등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중·단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정전망(<표 6> 참조)

- (수입) FY2021-22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전년보다 4.2%(330억파운드) 증가한 8,193억파운드(GDP 대비 36.2%)로 예상되나 이는 FY2019-20의 규모를 하회하는 수준임
  - 한시적 조세 인하 조치의 종료,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FY2022-23부터 경상수입이 GDP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 FY2025-26의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39.1%)은 FY1984-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지출)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FY2020-21에 54.4%로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바이러스 관련 지출 감소와 GDP 회복에 따라 급등세가 일부 완화되어 FY2021-22에 46.5%, FY2022-23에 41.8%로 하락할 전망
  - FY2020-21 ~ FY2025-26 기간 총관리지출의 연간 실질 증가율은 약 1.5%로 전망됨
- (재정수지) 경제가 재개되고 긴급 재정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 차입은 FY2020-21에 3,550억파운드(GDP의 16.9%)에서 FY2021-22

<표 6> 영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37.2	37.5	36.2	37.3	38.4	39.0	39.1
총관리지출(TME)	39.8	54.4	46.5	41.8	41.9	41.9	41.9
2020 예산에서 제시한 재정목표							
경상예산적자	0.6	13.3	7.6	1.7	0.6	0.1	0.0
공공부문순투자	1.9	3.6	2.7	2.8	2.9	2.8	2.7
수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3.5	2.6	2.5	2.3	2.4	2.5	2.5
기존에 법제화된 재정 목표							
공공부문순차입	2.6	16.9	10.3	4.5	3.5	2.9	2.8
경기조정순차입	2.6	16.5	9.7	4.2	3.3	2.8	2.7
공공부문순채무	84.4	100.2	107.4	109.0	109.7	106.2	103.8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3, Table 1. 2.

에 2,340억파운드(GDP의 10.3%)로 하락할 전망이나 이는 여전히 금융위기 시기보다 높은 수준임

- (국가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107.4%, FY2023-24에 109.7%까지 증가하여 FY1958-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기초 채무[62] 감소와 중앙은행 TFS[63]의 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 (예산안 주요 내용)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는 한편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성장, 투자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함

* 2021 예산안에서 FY2020-21과 FY2021-22에 대한 65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지원을 제시함. 2020 예산에서 발표한 조치를 포함해 FY2020-21과 FY2021-22의 지원 금액 합계는 4,070억파운드로 추계

-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경제 재개 계획을 반영해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연장하고, 팬데믹 단계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주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백신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투자

  •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를 9월까지 연장

  • 통합 급여(Universal Credit)의 표준 수당(standard allowance) 인상 조치 6개월 연장 및 근로세액공제급여(Working Tax Credit) 청구자에 500파운드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62) underlying debt(excluding the Bank of England)
63) Term Funding Scheme: 중앙은행의 대출 제도

-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관광 및 접객 부문 사업체와 일자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VAT 세율의 한시적 감면을 9월 30일까지 연장, 부동산 거래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인하 연장 등
- 기존 정부보증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회복 대출(Recovery Loan Scheme) 도입
- 접객, 숙박, 레저, 퍼스널 케어, 헬스장 등 사업장에 최대 1만 8천파운드의 1회성 보조금 제공
- 코로나19 백신공급 성공을 위해 추가 16억 5천만파운드를 투입하고 백신 테스트의 역량(capability) 제고를 위해 추가 5천만파운드 투자 등

- (공공재정 강화) 경제회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개인 소득세 인적 공제(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및 고세율 구간 한도(higher rate threshold)를 FY2021-22 수준으로 FY2025-26까지 유지
  - 2023년에 수익이 높은 대규모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64)]
  - 조세 회피 해결을 위한 신규 조치를 통해 FY2025-26까지 22억파운드 확보
-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와 기회를 확산시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역량, 자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
  - 2021년 4월부터 새로운 공제제도(super-deduction)를 도입하여 신규 장비 투자 시 130%의 자본 공제 혜택을 부여
  - 경영 개선 및 신규 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도모
  - 잉글랜드에 8개의 신규 자유무역항(freeport)을 개설하여 조세 감면, 간소화된 세관 절차, 정부 지원 등의 혜택 제공
  - 새로운 성장 전략(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을 통해 역량, 인프라,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예산에서 새로운 UK Infrastructure Bank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정
  -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150억파운드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 예정

■ 영국 재무부, FY2020-21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20-21) 발표 (2021. 2. 22.)[65)]

* 영국은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통상 매년 2월경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을 편성해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전년도 봄에 발표)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함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결(voted) 예산 기준) (<표 7> 참조)

- FY2020-21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본세출예산 대비 약 3,100억파

64) 수익 5만파운드 이하 기업은 19%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5만파운드 초과 기업은 단계적 세율을 적용하며 25만파운드 이상의 사업체는 25%를 부과

65)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0-21: Supplementary Estimates, 2021. 2. 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63166/Supplementary_Estimates_2020-21_web.pdf

<표 7> FY2020-2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결 예산 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FY2020-21 현재 계획 (a)	FY2020-21 조정규모 (b)	FY2020-21 수정 계획 (a)+(b)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	414,742	122,344	537,085
연간 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315,159	176,492	491,651
총순예산(Total Net Budget)	729,901	298,836	1,028,737
총비예산 지출 (Total Non-Budget Expenditure)	83,233	11,148	94,381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813,134	309,984	1,123,118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16,000	-132,516	-248,516
총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697,133	177,468	874,601

출처: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0-21: Supplementary Estimates*, 2021. 2. 22., Table 1

운드 증액한 1조 1,231억파운드로 편성

- 부처별 지출한도(DEL)[66]는 본세출예산 대비 1,223억파운드 증액된 5,371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67]은 본세출예산 대비 1,765억파운드 증액된 4,917억파운드임
- 총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68]은 본세출예산 대비 약 111억파운드 증액된 944억파운드임

- FY2020-21 총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69]은 본세출예산 대비 1,775억파운드 증액된 8,746억파운드로 수정

● (주요 변동 요인[70])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본예산 대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 관련 614억파운드(진단, NHS 긴급 대응, 백신 등), 고용 관련 698억파운드(고용유지지원금, 자영업자 소득지원금 등), 기업 지원 99억파운드(기업 지원 보조금, 대출 충당금 등) 등 본세출예산 대비 지출 증가
- 코로나19 관련 지출 외에 학자금 대출 재평가, 국방 자산의 감가상각, EU 탈퇴 비용 등 경상지출과 NHS 인프라 투자, 탄소 순제로 빌딩 등의 투자 지출도 본세출예산 대비 증가
- ODA 예산,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Help to Buy 등) 등의 일부 지출은 본세출예산 대비 절감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66)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DEL):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67) Annually Managed Expenditure(AM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68)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69)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규모의 합계를 의미
70) House of Commons Library, Revised Government spending plans for 2020/21, 2021. 3. 1.,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149/CBP-9149.pdf

중국

[예산·결산 등]

■ 재정부, 2020년도 예산집행보고[71] 및 2021년도 예산안[72] 제출(2021. 3. 5.)[73]

● 재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집행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에서 승인됨(2021. 3. 11.)

- 2020년 일반공공예산 수입[74]은 18조 2,895억위안으로 2019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2021년은 19조 7,650억위안으로 2020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0년에는 세수 기반이 악화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0년에 한 해 동안 대규모의 감세장비(減稅降費,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2조 6천억위안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계획
- 2020년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24조 5,588억위안으로 2019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2021년은 25조 120억위안으로 2020년 대비 1.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 2020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지출은 8조 3,315억위안으로 12.0% 증가

● (문제점 및 개선과제)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재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지방정부 부채를 비롯한 지방재정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7가지를 제시

- (재정수입)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로 인해 예산균형 달성이 더욱 어려워짐
- (지방재정) ▲지역 간 재정여력 불균등 ▲지방정부 정부투자사업 준비금 부족 ▲재정의 비신축성 및 경직성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지방재정 관련 난제로 언급
  - 지역별 재정여력 격차가 불균등하여 일부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수지 적자와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겪고 있음
  - 일부 지역의 정부투자사업 준비금(项目储备)이 부족하거나 사업 준비가 불충분하여 효과적인 투자 확대 등 정책 실행에 차질 발생
  -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의 비신축성과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커짐
  - 여전히 불법적인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隐性债务)가 증가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부담이 비교적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재정정책) 2021년 재정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지출강도 유지 ▲감세장비(減稅降費,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의 최적화 ▲적절한 수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설정

71) 2020년도 재정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월호, 2020 참조
72) 중국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이며 재정의 구조는 일반공공예산,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으로 구성됨
73) 중국 재정부, http://bgt.mof.gov.cn/zhuantilanmu/rdwyh/ysbgjyszx/202103/t20210314_3670203.htm, 최종 검색일자: 2021. 3. 29.
74) 일반정부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공공예산(全国一般公共预算) 수입은 조세수입(18개 세목)과 비조세수입(8개 세목)으로 구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축소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중단 ▲정부예산 긴축기조(紧日子) 운용을 제시

- (재정적자)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2% 근방을 목표치로 제시하며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새로운 재정리스크에 대비해 정책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20년 재정적자 규모[75]는 3조 7,600억위안으로 2019년 대비 1조 위안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3조 5,700억위안으로 2020년 대비 1,900억위안 감소할 계획
  - 동시에 2021년에는 코로나19 특별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 (지방정부 부채문제) 2020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76]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위안으로 축소할 것을 발표
  - 기발행된 특별채권의 규모가 올해에도 의도한 정책효과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축소한다고 밝힘
  -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신규 증가규모를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적합하다는 입장

● (주요지출) 2021년 중점 재정지출 내역으로 ▲혁신발전 및 산업도약 촉진 ▲내수확대전략 지원 ▲지방균형발전 및 도시화(城镇化) 지원 ▲농촌부흥전략 실행 ▲오염방지 및 생태계보호 지원 ▲민생보장 강화 ▲국방, 외교, 정치사법 분야 지원을 제시

- (혁신발전 및 산업도약) 중앙정부의 기초연구개발 지출을 10.6% 증가시킬 예정이며, 연구개발비의 75%만큼 세금을 공제하며 제조기업의 경우 100%로 확대
  - 2021년 전국 과학지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하여 일반공공지출 전체 증가율인 1.9%를 상회
- (민생보장) 고용, 교육, 보건 분야 투자를 증가하여 민생보장 강화
  - 중국정부는 고용우선정책(就业优先政策)을 내세우며 민생보장 부문에서도 고용을 최우선시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직업교육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
  - 2021년 전국 교육지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여 일반공공지출 전체 증가율인 1.9%를 상회하며, 교육지출을 GDP의 4%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
  - 개인 기본의료보험 보조금지원 단가를 30위안 증액하여 인당 580위안으로 인상하며, 기본 공중보건서비스 보조금지원 단가를 5위안 증액하여 인당 79위안으로 인상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원 연구원>

75)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일반공공예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공공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적자액으로 계산

76)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공식적인 재정적자의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수익성 사업에 대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수입은 정부성기금예산의 수입으로 계상됨. 재정적자 규모에 포함되는 지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을 통해 보전함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통권 제298호

■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 · 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4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4호(통권 제29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6.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질병관리청
KDCA

• 2021년 4월 15일 발행 • 제298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414-2134 • 월간 • ISSN 1226-2269 4